발간등록번호 | 11-1210000-000501-10

국세청
WWW.NTS.GO.KR

Singapore

싱가포르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NT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WWW.NTS.GO.KR

Singapore

싱가포르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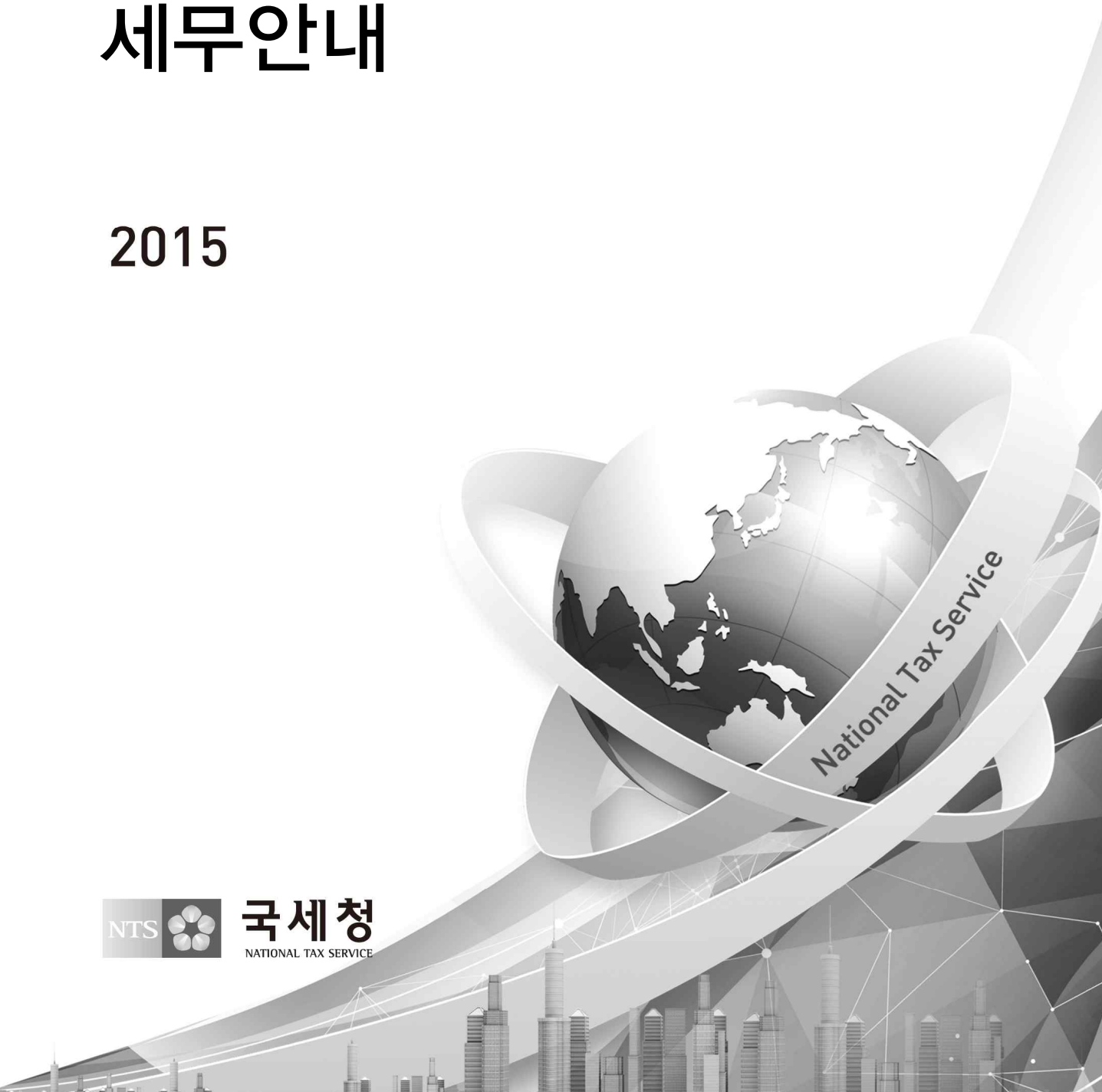

NT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세법 등을 2015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싱가포르세법 및 조세조약의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국세청은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일본, 스페인에 대한 세무안내서와 이전가격 과세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무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무안내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세무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서 진 욱

Ⅰ. 싱가포르 진출 개요 ····· 3

1. 국가 개요 ····· 4
2. 싱가포르 역사 ····· 5
3. 싱가포르 경제지표 ····· 6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7

Ⅱ. 싱가포르 시장특성과 거래시 유의사항 ····· 9

1. 싱가포르 시장 특성 ····· 10
2.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12

Ⅲ. 한·싱가포르 FTA와 투자 ····· 17

1. ·싱가포르 FTA 체결 내용 ····· 18
2. 한·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 20
3. 기업 형태의 법률상 구분 ····· 22
4. 투자형태별 구분 ····· 24
5. 투자 형태별 설립절차 ····· 27
6. 투자 유치 정책 및 투자법 ····· 31
7. 투자 환경 ····· 34

Ⅳ.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 39

1.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개요 ····· 41
2. 법인소득세 ····· 41
3. 개인소득세 ····· 66

4. GST(Goods and Services Tax) ····· 73
5. 기타세(Other Taxes) ····· 75
6. 세무조사와 불복제도 ····· 78

Ⅴ. **싱가포르의 조세지원제도** ····· 87

1. 조세지원제도 개괄 ····· 88
2. 조세지원제도 주요내용 ····· 88

Ⅵ. **싱가포르의 국제조세** ····· 93

1. 국제조세 개괄 ····· 95
2. 이중과세방지 규정 ····· 102
3. 이전가격세제 ····· 105
4. 최근 국제조세 동향 ····· 112

부록.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주요 규정 ····· 113

참고문헌 ····· 133

싱가포르 주요 개별세법 요약

1 법 인 소득세

○ 법인세율 : 17%
- 최초 과세소득 S$10,000(한화 약 8.6백만원)까지는 75% 세액면제
- S$10,000 ~ S$290,000(한화 약 245백만원)까지는 50%의 세액이 면제

○ 신고납부
- 익년 3월말에 법인세 예납신고 후 11월말에 확정신고
- (단, 연간 매출액이 S$1,000,000(한화 약 860백만원) 이하이고, 예상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예납신고는 면제됨)

2 개 인 소득세

○ 신고 및 납부
- 근로자는 익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4월 18일까지 전자신고
- 고용주는 익년 3월 1일까지 근로자 또는 과세당국에 근로자의 급여신고서(Form IR8A)를 제출하여야 함(근로자수가 12명 이상 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과세당국에 제출함)

○ 거주자 소득세율 :

~ 20,000	0.0%
~ 30,000	2.0%
~ 40,000	3.5%
~ 80,000	7.0%
~120,000	11.5%
~160,000	15.0%
~200,000	17.0%
~320,000	18.0%
320,000 초과	20.0%

○ 비거주자 소득세율

Max[15% or 거주자 적용세율]

통상 1역년동안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고용계약 체결 시 싱가포르 거주자가 됨(연속된 2년에 걸쳐 183일 이상 체류 시에도 2년간을 모두 거주자로 규정) 비거주자의 경우 각종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3 원 천 징 수

○ 소득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 배당소득 :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시 원천징수의무 없음
- 이자소득 : 외국법인에 대한 이자지급시 10%
  (한국 - 싱가폴 조세조약)
- 용역비/경영자문료 : 싱가포르 내에서 수행되는 용역비/경영자문료에 대하여 17%

○ 신고 및 납부

외국법인에 지급한 달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날의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약에 의한 지급일이 실제 지급일보다 먼저인 경우 계약에 의한 지급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4 GST (Goods and Services Tax)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GST 과세
통상 7%가 과세되나 재화의 수출 또는 국제간 용역거래는 아래 조건이 해당되면 영세율 적용(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 싱가포르 이외의 나라에 속한 자와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될 것
2) 서비스 수행되는 시점에 상기포르 이외의 나라에 속한 자가 서비스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
3) 서비스 수행되는 시점에 싱가포르에 소재한 재화나 토지와 관련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

○ GST등록

- 필수등록 : 지난 12개월간 과세공급가액이 S$1,000,000(약 한화 816백만원) 초과 또는 향후 12개월간 예상 과세공급가액이 S$1,000,000 초과
- 임의등록 : 위의 필수등록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의등록 가능하나 등록시 관할당국의 허가없이는 최소 2년간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신고 및 납부
통상 신고는 분기별로 하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함, GST 조기 환급을 원하는 경우 매월 신고 선택가능, 단 임의로 GST 등록을 한 자는 반기별로 GST 신고가 가능함

5 사 회 보장세

○ 싱가포르 중앙연금(Central Provident Fund) : 싱가포르시민과 싱가포르 영주권자만이 가입대상 (외국인은 가입대상이 아님)

1) 50세까지 16%(고용주), 20%(근로자)
2) ~55세까지 14%(고용주), 18.5%(근로자)

단, 총 고용주 및 근로자의 합산 총 연간부담 한도는 S$30,600이며,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상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

국세청
WWW.NTS.GO.KR

I

싱가포르 진출 개요

1. 국가 개요 ····· 4
2. 싱가포르 역사 ····· 5
3. 싱가포르 경제지표 ····· 6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7

1 국가 개요[1)]

❑ 국 명	싱가포르 공화국 영 어 : Republic of Singapore 중국어 : 新加坡共和國
❑ 위 치	동남아, 적도 근처(북위 1.09 - 1.29도, 동경 103.36 - 104.25도)
❑ 면 적	약 718.3km2(서울시의 1.18배)
❑ 기 후	열대성(연중 고온 다습)
❑ 수 도	싱가포르(도시국가)
❑ 인 구	5,469,700명
❑ 민 족	중국계(74.3%), 말레이계(13.3%), 인도계(9.1%), 기타(3.3%)
❑ 언 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공용어
❑ 종 교	불교 33.3%, 기독교 18.3%, 이슬람교 14.7%, 도교 10.9%, 힌두교 5.1%, 기타 0.7%, 무교 17%
❑ 건 국 일	1965년 8월 9일(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실권자)	대통령 : Tony Tan Keng Yam[취임일 : 2011년 9월(임기 6년)] 총 리 : Lee Hsien Loong [취임일 : 2004년 8월 (국회 임기 5년 단위)] - 2006년 5월 및 2011년 5월 총선에서 집권당 승리를 이끈 후 재집권

1) 자료 : 싱가포르 통계청, 통상산업부, 경제개발청

2 싱가포르 역사

❑ 13세기 스리위자야 왕국 트리부아나 왕이 싱가포르 근방을 표류하다가 상륙 후 목격한 사자를 보고, 싱가푸라(Singapura : 사자의 도시)라 명명하여 유래

❑ 1365년 자바인의 문헌에 등장하고 14세기 후반부터 Singapura 라는 표현을 사용

❑ 19세기 초까지 네덜란드의 영향권 하에 있다가 영국이 1819년 무역의 중심지로 싱가포르를 개발하면서 영국의 세력하에 들어간 이후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지만 일본의 패망으로 1946년 다시 영국의 직할식민지가 됨

❑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의 구성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인종 정책에 관한 갈등으로 2년 만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도 분리, 1965년 8월 9일 완전한 독립국가가 됨

❑ 1965년 9월 21일 유엔 가입을 시작으로, 10월 15일 영연방에 가입하였고, 12월 22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명을 싱가포르 공화국으로, 국가 원수를 대통령으로 정함. 1967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함께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결성

❑ 1968년 4월 13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인민행동당(PAP)이 58석 전 의석을 차지하여 집권하였고, 이후 리콴유 총리를 중심으로 30년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장기간 안정적인 정치를 펼침

❑ 1991년 1월 헌법 개정을 통해 6년 임기의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고, 같은 해 8월 총선거를 실시하여 고촉통 총리 내각이 출범하였고, 2004년 8월 고촉통 총리 사임, 리센룽 부총리가 총리에 취임 후 2011년 5월 총선거

3 싱가포르 경제지표 (2014년 기준[2])

❑ GDP : US$ 3,081억	❑ 화폐단위 : 싱가포르 달러 (S$)
❑ 1인당 GDP : US$ 56,319	❑ 환 율 : US$1 = S$ 1.3213
❑ 경제성장률 : 2.9%	❑ 외환보유고 : US$ 2,569억
❑ 실 업 률 : 2.0%	❑ 교역규모 : 수출 US$ 4,098억
❑ 물가상승률 : 1.0%	수입 US$ 3,663억

❑ 산업구조(GDP 내 비중)

○ 제조업(18.4%), 도소매업(17.5%), 기업서비스(15.8%), 금융서비스(12.5%), 기타 서비스업(11.5%), 운송 및 저장업(6.9%), 건설업(5.1%), 정보통신 서비스업(4.0%)등

❑ 주요 수출입 대상국 (단위 : 10억S$)

○ 수출대상국 : 중국(65), 말레이시아(62), 홍콩(57), 인도네시아(49), 미국(29), 일본(21), 한국(21)

○ 수입대상국 : 중국(56), 말레이시아(49), 미국(48), 대만(38), 한국(27)

❑ 교역품목

○ 수출 품목 : 집적회로, 원유 및 연료유, 반도체 메모리 등
○ 수입 품목 : 원유 및 연료유, 집적회로, 통신부품 등

2) 자료 : IMF, 싱가포르 통계청, 통상산업부, 인력부, 통화청, 국세청, IE Singapore

4 우리나라와의 관계[3)]

❑ 체결협정

항공협정('72), 이중과세방지협정('79), 해운협정('81), 사증면제협정('82), 한-싱 FTA 체결('05), 한-ASEAN FTA(상품·서비스 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다수

❑ 교역규모 (2014년)

○ 350억 5,300만 달러(수출 US$ 23,750백만, 수입 US$ 11,303백만)

○ **한국의 5대 수출국, 13대 수입국**

❑ 교역품

○ 한국의 수출 : 경유, 선박, 집적회로반도체, 휘발유, 윤활유 등

○ 한국의 수입 : 집적회로반도체, 중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석유화학중간원료 등

❑ 투자교류

○ 싱가포르 투자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157건, 8억 1,418만 달러 (2013년 연간 / 신고기준)
- 180건, 8억 7,424만 달러 (2014년 연간 / 신고기준)
- 1,911건, 74억 6,755만 달러 (2014년까지 누계 / 신고 기준)

○ 기업규모별 투자 진출 현황

- 대 기 업 : 921건, 63억 54백만 달러 (2014년까지 누계기준 / 신고기준)
- 중소기업 : 812건, 10억 17백만 달러 (2014년까지 누계기준 / 신고기준)

3) 자료 : KOTIS, 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 통계청, 싱가포르 한인회

○ 업종별 투자 진출 현황

- 도매 및 소매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순
- 제조업 중에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약 31% 차지

❑ **교민** : 약 2만 5천명

❑ 주요 협력 내용

○ 세계 진출 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논의

- '09년 한 - 아세안 정상회의시 싱가포르 내 한국문화원 설립을 제안

○ '11년 제3국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

- 향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플랜트 기업들에게 하청 협력관계를 제공하고,
- 싱가포르는 한국 금융기관들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 · 융자 합의

○ 『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4] 산하 실무자급회의』 한국 개최

- 아시아지역 16개국 이전가격과세 실무담당자들의 연례포럼으로 2010년 5월 서울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과세방안에 대해 토의함

❑ 싱가포르 내 한류열풍

○ 한류의 영향으로 드라마, 음악, 영화, 음식, 패션 사업이 점차 성장

- 비비고, 매드 포 갈릭, BBQ 등 유명 한국 레스토랑이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지인들에게도 매우 인기
- CJ푸드빌은 싱가포르 최대 유통업체인 FairPrice와 협력하여 한국 음식을 전국매장에 공급 및 한국 음식관을 별도로 둔 매장도 상당수 확보
- '11년 연말 개최된 Mnet Asia Music Award 공식후원사로 활동하면서 한류스타들을 내세워 다양한 자사 상품을 홍보
- 한국패션, 미용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도 높아 한국에서 들여온 의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쉽게 볼 수 있으며,
- 미샤, 더 페이스샵, 스킨푸드, 에뛰드하우스, 라네즈 등이 한류스타들을 모델로 활용, 팬 사인회를 여는 등 브랜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편임

4) SGATAR 회원국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련,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몽골, 태국, 인니,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등 16개국

국세청
WWW.NTS.GO.KR

Ⅱ

싱가포르 시장특성과 거래시 유의사항

1. 싱가포르 시장 특성 ····· 10
2.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12

1 싱가포르 시장 특성

가. 시장 특성

1. 동남아 최대의 교역 국가로 쇼 윈도우(Show Window) 역할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나, 교역 규모로 보면 동남아 최대 시장이고 세계적인 전자산업 다국적기업들의 생산 및 유통기지 역할

○ 동남아의 물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전 세계 상품이 집결하고 인근 각지로 재수출되는 '중계 무역센터'로, 전체 수출에서 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47~50%내외로 재수출 지역은 인근 동남아는 물론 서남아, 중동,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포함됨

2. 자유무역 및 완전 경쟁 시장

○ 자유무역 정책하에 일부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데, 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제품 등 4대 품목의 경우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 시장 진출입이 자유롭고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 시장은 비관세 장벽 등 수입 장벽이 거의 없는 완전경쟁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지 바이어들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양호한 제품 발굴 및 신제품 개발 욕구가 무척 강하다.

3. 대규모 유통업이 발달된 시장

○ 연간 900~1,200만 명 가량의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 및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대규모 유통센터가 발달했으며,

○ 유통업 형태는 백화점, 쇼핑몰, 면세점, 할인점, 전문용품점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일본계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나. 소비자 특성

1. 싱가포르인들은 제품의 가격에 대단히 민감

○ 전통적으로 중계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소비 행태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2. 싱가포르인들은 브랜드 제품을 선호

○ 일찍부터 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해 유명 브랜드의 시장 진입에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외국 브랜드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

3. 첨단 전자제품 소비시장의 성장

○ 얼리어댑터가 많고 첨단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아 모바일기기, 스마트기기의 세계최고 수준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다. 유통채널

1.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쇼 윈도우(show window)

○ 일찍이 자유무역정책을 펴와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싱가포르는 세계 일류 브랜드는 물론 중국, 동남아산 저가 제품을 망라한 전 세계 상품이 집결하는 거대한 진열장이 되고 있다. 현재 일부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 제품에는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2. 도매업의 발달이 저조한 시장

○ 유통 구조를 보면, 대부분 수입업체로부터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매업체로 연결되고 있으며, 도매상은 주류, 음료, 농산물 등 일부 분야로 제한되어 있다.

○ 싱가포르 소비자는 물론 연간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방문자를 겨냥하여 소매업은 상당히 발달해 있으며, 그 형태는 대규모 쇼핑몰, 백화점,

양판점, 전문점, 슈퍼마켓 등 다양하다.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100여 개 이상이 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오차드 로드 인근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내국인들의 거주 지역에 위치해 있다.

○ 외국 자본이 대형 백화점을 중심으로 대거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대표적으로 일본계 유통조직으로는 다카시마야(TAKASHIMAYA)·소고(SOGO)·이세탄(ISETAN)·세이유(SEIYU) 등이, 영국계 유통조직은 ROBINSON·COURTS 등이 있다.

3. 초현대식 쇼핑센터와 재래 시장이 공존

○ 보통 싱가포르 하면 초현대식 건물의 휘황찬란한 백화점들을 연상할 것이다. 물론 싱가포르에는 수많은 쇼핑센터들이 있지만, 시내곳곳에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비슷한 형태의 시장들도 자리 잡고 있다.

○ 재래시장은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촌(HDB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의 주공아파트에 해당됨)을 끼고 형성돼 있다. 한편, 쇼핑센터들은 최대 번화가인 오차드 거리를 비롯하여 마리나스퀘어, 선텍시티 등에 집중돼 있는데 통상 여러 쇼핑센터, 백화점들이 모여 거대한 상가군을 이루고 있다.

2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거래시 유의사항

○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처벌, 법질서의 엄격한 적용 등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어 현지 기업인들의 거래상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 이에 따라 싱가포르 기업인들은 거래하는 상대 기업에 대해서도 계약 준수 등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 특히 중국계 상사들은 비즈니스와 관련,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사소한 인콰이어리라도 정성을 다해 신뢰관계를 돈독히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 세일즈 출장 등의 경우 공급자가 바이어를 방문,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약속 시간을 정해야 하며, 상식적인 에티켓이겠으나, 현지인들의 시간관념이 철저하므로 약속시간 엄수는 필수적이다.

○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영향으로 국민의 의식 구조가 서구화되어 있고, 여성 인구의 취업 비율이 높은 등 사회 생활에 남녀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장유유서 개념이 희박한 편이므로 나이가 젊다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가볍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선물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선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주더라도 과다한 것보다는 간단한 기념품 등이 바람직하다.

다. 상담시 유의 사항

○ 상담시 현지 바이어들은 제품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현지 바이어들은 보통 싱가포르는 물론 인근 국가로의 재수출 등을 병행하므로 독점권은 싱가포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청 받을 경우 조건이 좋다고 선뜻 받아들이기 보다는 업체의 신뢰성과 유통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일정 기간 검토해 보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약전 시험적으로 거래를 해보는 것이 좋다.

○ 싱가포르 바이어들의 가격 협상 태도는 매우 직설적이며 집요하다.

- 제품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 원가 정도로 터무니없게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바이어들의 이러한 요구에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 또한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 바, 상담시 자세히 모르는 사항을 아는 체하는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바이어 사무실 방문 상담의 경우 사무실의 규모가 작다거나 위치가 구석진 곳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바이어를 가볍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사무실의 규모나 시설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상당한 물량을 취급하는 알찬 바이어들이 있으므로 겉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또한 바이어들의 옷차림새가 초라하더라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상담시 참고 사항 부연 설명>

① 상담 진행 관련

- 싱가포르 바이어들은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되어있어 상담 내용이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속도가 빠르다.
- 관심 품목의 경우 상담 내용이 진지하고 후속 상담이 이어진다.

② Quotation 관련

- FOB 및 CIF 방식 모두 사용 가능하며 큰 오더인 경우 FOB 조건을 선호하고 보통의 경우는 FOB, CIF 방식 모두 사용

③ 대금 지불 방식

- 소량 주문시에는 T/T방식도 많이 사용하나 통상적으로는 L/C로 거래를 추진한다.
- L/C는 싱가포르 내 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바람직함(주변국 L/C는 검토 필요)

④ 주문은 소량 주문부터 시작

- 싱가포르 바이어는 거래를 소량 오더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강함.
- Big Buyer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대량 오더는 하지 않고 점차 주문량을 늘려 나간다.

⑤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장 개척의 관건
-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이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에 있는 공급 업체들이 시장개척을 위하여 현지 바이어들에게 수시로 접촉함에 따라 가격 및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가격 인하 협상 능력은 상당하며 집요하기까지 하다.

라.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동남아, 나아가 전 세계의 중계 무역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에는 그만큼 재수출용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바이어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이에 다품종 소량주문 체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근 시장에 해당 제품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첫 거래부터 최저 주문량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바이어는 거래를 쉽게 포기하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제반 거래 활동 과정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이의 기록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 특히 격식,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한다. 거래를 처음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 레터 형식만 보고도 어느 정도의 회사라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 싱가포르에서는 영어가 비즈니스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 싱가포르인들의 영어 구사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싱가포르 바이어들이 한국 업체들과 거래 시 가장 큰 어려움이 한국 업체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므로, 영어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문서 송수신 시에는 문서 번호(Reference No)를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향후 문제 발생 시, 주고받은 문서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 클레임을 제기하는 레터를 접수했다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회신이 없을 시 바이어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 과거 결재 방식을 D/A로 계약한 이후 바이어가 레터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수출업자의 대응이 미진, 대금 미결제 건으로 이어진 바도 있다.

<자료 작성시 참고 사항>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구매 의뢰 요청을 검토해야 하는 구매 담당자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구미의 바이어들은 팩스 한 장을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해 싱가포르 바이어들은 받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빈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① **회사 소개서**

○ 기본 사항
- 회사명, 연락처(TEL/FAX/HANDPHONE/E-mail)
- 대표자, 담당자 및 직위, 홈페이지 주소

○ 일반 사항
- 과거 주요 실적(바이어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임)
- 과거 또는 현재의 수출 경력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 및 수출 금액 등을 기재 / 거래 파트너가 유명 업체인 경우 가급적 업체명도 기재 요망
- 회사 규모, 종업원 수, 설립연도 등 기재

○ 기타
- 각종 주요 획득 인증 종류
- R&D 투자 현황 및 방법
- 공산품의 경우, 수출 이후의 A/S에 관하여 언급 요망.

② **제품 카탈로그**

○ 경쟁품 대비 자사 제품의 경쟁 우위(예; 가격 경쟁력 및 차별적 우위)에 대한 설명 첨언 요망

○ 샘플이 있는 경우, 샘플을 포함해서 발송 요망

국세청
WWW.NTS.GO.KR

Ⅲ

한·싱가포르 FTA와 투자

1. ·싱가포르 FTA 체결 내용 ····· 18
2. 한·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 20
3. 기업 형태의 법률상 구분 ····· 22
4. 투자형태별 구분 ····· 24
5. 투자 형태별 설립절차 ····· 27
6. 투자 유치 정책 및 투자법 ····· 31
7. 투자 환경 ····· 34

1 한 · 싱가포르 FTA 체결 내용[5)]

○ 1999년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담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시 싱가포르의 고촉통 총리가 한국 · 싱가포르 · 칠레 간 FTA 체결을 제의한 이래, 2003년 10월 협상을 시작하여 2005년 8월에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 3월 2일 한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 한 · 싱가포르 FTA는 상품 외에 서비스, 투자,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서 다양한 무역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인 FTA이다. 또한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 경제특구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규정을 마련하였다. 상품 분야에서 싱가포르는 이미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화한 상황이었으며,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품 양허안 개요>

(단위 : 우리나라 HS 10단위 기준, %)

구분	품목 수 (비율)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 철폐	6,724 (59.7)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선박, 섬유류 등	제분용 밀, 사탕, 무, 수수, 팜유 등	연어, 홍합, 냉동 해조류 등	석재류, 원목, 단판 등
5년 철폐	2,009 (17.8)	석유아스팔트, 글리세롤 등 유기화학품, 전기다리미 등	곡류가공품, 커피, 초콜릿 등	염장품, 통조림 등	대바구니, 부채살 등
10년 철폐	1,582 (14.1)	염화수소, 포름산 등의 유기화학품, 전동기 등	살구, 딸기, 콩, 감자, 무, 인삼, 주류 등	고등어, 대구 등 일부 냉동품, 쥐치포 등	제재목, 성형목재, 파레트 등

5) 「한 · 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참조

구분	품목 수 (비율)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양허 제외	946 (8.4)	휘발유 등 석유제품, 볼베어링, TV 수신기 등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쇠고기 등	양식용 활어 및 패류, 열대 관상어 등	합판, 섬유판 등
계	11,261 (100)				

○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은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를 약속했다. 특히 네거티브 양허방식을 사용(열거된 분야 이외에는 자유화)하고 건축서비스, 해상화물처리서비스, 오락 및 문화서비스 등에서 싱가포르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전기용품 안전 및 통신기기 분야에서 최초로 정부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6]체결에 합의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 국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싱가포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CNG 정책 및 기술 개발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

<한·싱가포르 양국의 서비스·투자 양허안 개요>

	현재유보(Annex 9A)	미래유보(Annex 9B)
우리나라 (총81건)	회계, 세무, 변리사, 약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스크린쿼터, 운송서비스에 대한 제한, 기본 통신사업 지분제한, 지방정부조치 등 50건	비거주자에 대한 자본거래 제한,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방송, 전력, 우편, 도박, 법률,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등 31건
싱가포르 (총64건)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 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제한 등 34건	법률, 방송, 도박, 신문 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

* 서비스 및 투자 양허방식(Negative방식) : 부속서(Annex Ⅰ, Ⅱ)에 기재된 정부 조치 또는 서비스 분야 이외에 모든 조치 및 분야는 협정상의 의무 부담
  - 현재유보(Annex 9A) : 서비스협정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현존 정부조치를 의미하며 장래에는 현존하는 것보다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
  - 미래유보(Annex 9B) : 서비스협정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

6) 제품, 제조공정, 서비스가 자국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상대국의 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 한 · 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가. 한 · 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의[7)]

1.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 강화

○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 ·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이다.

○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로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 한 · 싱가포르 FTA는 최근 FTA 논의가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 번째 FTA가 되었다.

○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ASEAN과의 FTA협상 추진시 전략적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 이로써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3.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 · 투자 확대 및 원활화

○ 한 · 싱가포르 FTA는 내용 면에서 상당히 포괄적이다. 상품분야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 투자 · 정부조달 · 지적재산권 등 여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 · 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되었다.

---

7) 「한 · 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참조

○ 또한 한·칠레 FTA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력 분야 등도 추가되었다.

4.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

○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한·싱가포르 FTA상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되었다.

○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북한산 제품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이 국가들로 북한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으나, 한·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나. 한·싱가포르 FTA 체결의 기대효과[8)]

○ 한·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가 2번째로 체결한 FTA로 이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와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싱가포르간의 결합으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싱가포르의 경제 규모, 기존의 개방 수준, 산업구조상 우리나라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공산품 수출을 급격히 증대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싱가포르는 이미 알코올 음료수 4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 상태였다. 싱가포르 역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8)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싱가포르 수출의 절반가량이 재수출이며 석유화학과 일부 전자품목을 제외하면 싱가포르 산으로 인정 될 수 있는 품목이 적기 때문이다.

○ 싱가포르는 농산물 수입국가이므로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 역시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및 투자의 경우 싱가포르의 금융, 운송, 통신 및 상업서비스의 對한국 진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한 동남아시아 금융, 운송, 통신 허브인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투자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 싱가포르에 주재한 다국적 기업(특히 금융기업)의 對 한국 투자 증대 효과도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서비스기업(특히 금융기업)이 싱가포르의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업 형태의 법률상 구분

○ 싱가포르의 기업 형태는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합작기업**(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회사**(Company),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LP) 등 크게 5가지로 나뉘며,

○ 특별히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기업형태는 없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 또한 군수물자제조, 공공서비스 및 언론사 등 특수사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고,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불로 회사설립이 비교적 자유롭고 간편하다.

<기업형태별 비교>

	개인기업	합작기업	유한책임회사	회 사	합자회사
정의	개인이 소유하는 사업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2 명 이상의 연합체	각 파트너 개인의 책임이 제한된 형태의 합작기업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 주주 및 이사와는 별개로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기업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기업.
소유	개 인	- 2명 이상 20명 미만의 파트너로 구성. - 20명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되는 경우 회사로 구분 (전문직업 인의 합작제외)	- 2명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 - 개인이나 단체 (회사 또는 다른 유한책임회사)가 파트너가 될 수 있음	면제사회사. 2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 (법인은 주주가 아니어야 함) ▪ 사회사(50명 이하의 주주) ▪ 공회사(50명 초과의 주주)	- 2명 이상으로 구성(1명이상의 무한책임사원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법적 지위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소유자는 무한 책임을 짐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소유자는 무한 책임을 짐. 파트너 개개인은 기업의 부채 및 다른 파트너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짐	독립된 법인격을 지니며, 소유자는 제한된 책임을 지님	독립된 법인격을 지니며, 주주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부채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별개의 독립법인 아님.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며, 유한책임 사원은 한정적인 책임을 짐
설립 요건	- 18 세 이상의 개인으로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EP(고용비자) 및 DP(동반비자) 소유자 - 소유자가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현지인을 현지 매니저로 지정해야함		- 최소 2명의 파트너로 구성되며, 파트너는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기업체(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가 될 수 있음. - 이사 중 최소 1명(18세이상, 회사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은 싱가포르에 거주하여야 함	- 18세 이상의 개인, 1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며 최소 1명이상 의 이사가 싱가포르에 거주하여 야 함. - 외국인이 동 회사의 현지 이사로 활동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은 노동부에 EP (고용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최소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이 모두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경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현지인을 현지매니저로 지정해야 함
수수료	S$ 65	S$65	S$165	S$315	S$65

4 투자형태별 구분

가. 자회사 (Subsidiary Company Private Limited)

○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 및 이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으로 단지 외국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기업으로 간주된다.

○ 싱가포르의 회사 (Company)의 설립 요건과 같이 최소 1명의 주주와 1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최소 1명의 이사는 싱가포르 거주인 이어야 한다.

○ 자회사(싱가포르 기업의 자회사 또는 외국기업의 자회사)는 모기업과 같은 상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지점은 외국 기업의 단순 확장으로 간주되어 별개의 독립된 법 인격이 없으며, 모기업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사업범위도 모기업과 동일해야 한다.

○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점과 달리 모기업의 보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세금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싱가포르 세법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지점 (Branch Office)

○ 외국기업으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점은 현지 법인 또는 자회사와 달리, 모기업과 동일한 기업 또는 모기업의 단순 확장으로 간주되므로 별개의 독립된 법 인격이 없다.

○ 모기업과 같은 상호를 사용 하고, 기업활동 또한 모기업의 사업활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연례 이사회의 개최 등에 대해서 모기업이 등록된 국가의 법에 따른다.

○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지점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세금은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싱가포르 세법상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모회사에서 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송금은 배당절차 없이도 언제든 가능하다.

○ 최소 설립요건으로 두 명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지점의 등록비용은 주식자본금이 있는 경우 315 싱가포르 달러로 법인 및 지점 설립 수수료와 동일하나, 주식자본금이 없는 경우 1,215 싱가포르 달러이다.

<자회사(Subsidiary Company)와 지점(Branch) 비교>

	자 회 사 (Subsidiary Company Private Limited)	지 점 (Branch Office)
법 인 격	있음	없음 (모회사의 확장)
상 호	모기업과 같을 필요 없음	모기업과 동일
비즈니스 활동영역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활동	모기업과 같은 활동
대 상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현지기업 또는 외국기업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모기업의 채무변제책임	없음	있음
구성원 수	최대 50명	해당 사항 없음
최소설립요건	1명의 주주(외국인 또는 현지인 또는 기업), 1명의 거주 이사	2명의 싱가포르 거주 대리인

	자 회 사 (Subsidiary Company Private Limited)	지 점 (Branch Office)
유한책임	있음	없음
회계감사 의무	있음	있음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	있음	있음
연간 보고서 제 출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지점 및 모회사의 감사보고서
세 금	거주자, 현지 세금혜택 수혜가능	비거주자, 현지 세금혜택 수혜불가
수 수 료	S$315	S$315(주식자본금 있는 경우) S$ 1,215(주식자본금 없는 경우)
관련정부부서	ACRA & IRAS	ACRA & IRAS

다.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서 단순 연락업무 및 조사를 수행하거나 법인설립 이전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외국회사의 관리 목적상 싱가포르 정부의 개설 승인을 필요로 한다.

○ 연락사무소의 상호는 모기업과 같아야 하며, 시장 조사 및 단순 연락 활동만 수행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승인이 되므로 3년 이상이 되면 철수하거나 법인 및 지사로 전환해야 한다.

○ 연락사무소 설립 시 본사로부터 파견된 연락사무소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

5 투자 형태별 설립절차

가. 투자 개황

○ 싱가포르는 기업설립 및 운영에 있어 외국인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점 설립은 물론 개인기업, 합작기업, 유한책임회사, 회사, 합자회사 등 법적으로 구분되는 5가지의 기업형태 모두 설립이 가능하다.

○ 외국인이 진출 선호형태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 비즈니스 영역 및 사업전략, 모기업과의 관계설정에 따라 각 기업형태별 세금, 등록요건 등의 특징을 살펴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수립해 온 만큼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기업형태는 없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기업의 규모, 사업 특성 및 계획에 따라 진출 형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형태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모기업의 틀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 형태로 진출한다.

나.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 싱가포르의 회사등록절차는 크게 회사명(상호)의 승인과 회사등록신청의 두 단계로 나뉘며, 모든 절차는 싱가포르의 회계 및 기업관리청인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BizFile(www.bizfile.gov.sg)을 통해 이루어진다.

○ 또한, 회사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회사등록 이후 연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상호 및 주소 등의 각종 변경사항 등록 등도 Bizfile을 통해 이루어진다.

○ 동 온라인 시스템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고용비자 소유자 등에게 부여되는 'Sing Pass' 를 통해 접근 가능하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업(회계사, 변호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다.

1. 법인(Company) 및 자회사(Subsidiary Company Private Limited) 설립절차

○ 자회사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으로 단지 외국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싱가포르 회사설립 요건 및 절차와 동일하다.

<법인 및 자회사 설립절차>

	내 용	구비서류	신청 방법	비용	소요 기간
설립 요건	- 최소 한 명의 주주와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 이사, 외국인이 현지 이사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에 Entre Pass를 신청할 수 있음 - 최소 자본금 : 1불				
상호 신청	- 회사등록이전 상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후 승인. 승인시 동 상호를 2개월간 보전해두므로 상호 승인 후 2 개월 이내 회사 등록절차에 들어가야 함. 불승인시 다른 상호로 재신청 해야 함		온라인 신청 www. bizfile. gov.sg	S$15	2~3시간

	내 용	구비서류	신청 방법	비용	소요 기간
회사 신청	- 상호신청 이후 2개월 이내 회사 신청을 해야 함. 외국인, 외국기업 의 경우 법인설립 절차를 위해 현지의 전문 기업을 대리인으로 이용해야 함	- 정관(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준법서약(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Form 6) - 신원 증명서 (Certificate of Identity - Form 7) - 이사 취임동의서(Consent to Act as Director and Statement of Non Disqualification to Act as Director- Form 45) - 등록 사무실 신고서	온라인 신청 www.bizfile.gov.sg	S$300	1일. 단, 허가를 요하는 경우 2주~1달 소요 될 수 있음.

2. 지점 설립절차

○ 지점 설립절차 또한 싱가포르 회사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하나 구비서류에 있어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지점 설립절차>

	내 용	구비서류	신청 방법	수수료	소요 기간
설립 요건	- 두 명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대리인 - 최소자본금 : 1불				
상호 신청	- 지점등록이전 상호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등을 심사 후 승인 - 승인시 동상호를 2개월간 보전해 두므로 상호 승인 후 2개월이내 회사 등록 절차에 들어가야 함 - 불승인시 다른 상호로 재신청해야 함		온라인 신청 www.bizfile.gov.sg	S$15	2~3시간

	내 용	구비서류	신청 방법	수수료	소요 기간
회사 등록		- 외국 회사(즉 본사)의 설립증명서 사본 - 회사 설립 규약 및 정관 사본 - 이사 전원의 인적 사항 - 현지 이사(책임자)의 권한 - 현지대리인 임명 및 권한에 관한 규약 - 현지대리인 서약	온라인 신청 www. bizfile. gov.sg	주식 자본금이 있는경우 S$300 주식 자본금이 없는경우 S$1,200	1일. 단, 허가를 요하는 경우2주 ~1달 소요될 수 있음

3.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등록 신청	구비서류	신청 방법	담당 기관	수수료	소요 기간
신청서 제 출	- 모기업의 법인등록증(softcopy) 영문 또는 영어로 번역된 공식 자료 - 모기업의 최근 연차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softcopy) * 온라인 신청시 첨부. 전자 파일(softcopy)본이 없을 경우 인쇄본(hardcopy)제출도 가능	온라인 신청 (http : //roms.ie singapore.gov. sg)	IE Singapore	S$200, 1년 단위로 승인, 최대 3년 까지 가능	3~5일

6 투자 유치 정책 및 투자법

가. 투자 유치 정책

싱가포르에는 따로 투자촉진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가장 가까운 형태로는 투자를 유치하고 싱가포르 경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1967년에 도입된 '**경제 확대 우대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ct - Chapter 86)'이 있다.

이는 싱가포르로 투자를 유치하고 싱가포르 기반 기업들이 아세안, 중국, 인도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관으로 하여금 그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 및 제품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분야별 제공혜택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선구자적 산업 및 서비스** : 15년까지 세금 면제
○ **개발 및 확대 우대책** : 20년 미만 기간에 대해 5% 이상의 세율 할인
○ **서비스 수출** : 최대 10년까지 세금 면제
○ **생산장비용 외채** : 세금 면제 또는 세율 할인
○ **기업 투자 우대** :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
○ **R&D 및 지적재산권 관리 허브** : 소득세 면제
○ **해외 투자 우대** : 해외 손실에 대한 세금 납부 연기

이러한 인센티브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인센티브는 주로 4가지 사항

① **총 사업비용 (Total Business Spending)**, ② **투자금액**, ③ **고용창출**,
④ **비즈니스 활동의 종류(마케팅, 지역본부, R&D, 제조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인센티브 범위는 한정되어있지 않고,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동 프로젝트의 경제발전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된다. 예컨대 세금감면은 0%부터 가능하며, 감면 기간 또한 5년, 10년, 15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도 가능하다.

경제개발청의 프로젝트 담당자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에 대한 심사는 EDB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EDB 기관장이 최종 결정권한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센티브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경제개발청과 사전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투자는 거의 완전자유화 되어 있고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 제한을 두고 있다.

제조업은 물론이며 서비스부문도 특별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투자가 가능하며 현재 무기, 탄약 등의 군수물자 생산과 일부 공공서비스(전기, 가스, 상수도)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공공성이 높은 신문사, 항공사 및 해운회사의 지분소유는 각각 관련법에 따라 통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장려 및 제한 항목>

장려 항목	제 한 항 목
○ 고도기술산업, 자본집약산업, 첨단산업 등 (외국인투자는 거의 완전 자유화되어 있어 제조업은 물론이며 서비스부문도 특별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투자 가능)	○ 공익에 관계된 부문 투자 금지 - 무기·탄약 제조업, 공공 서비스(전기, 가스, 상수도), 전기통신시스템 등 ○ 공공성이 높은 기업의 지분소유 통제 - 신문사, 항공사, 해운회사 - 한편, 지속적인 민영화는 실행중임 ○ 금융부문에 대한 제한은 완화 추세 - 증권회사 지분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허가에 따라 70%까지 취득 가능 - 현지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과거 40%까지만 가능했으나 99년 5월 금융개방조치로 제한철폐 - 외국계 은행의 국내금융서비스 전면 개방

외국인투자유치만을 규정한 특별법은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 법인설립 및 투자와 관련된 법을 따르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나. 투자법"의 법규들이 적용된다.

나. 투자법

○ **Companies Act(회사법)** : 법인 설립, 외국기업의 등록(지사/지점 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 경영, 주식, 청산, 회계 처리, 회계 감사, 행정 처리 관련 업무 및 책임에 관한 내용, 기업 설립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등을 규정

○ **Business Registration Act(사업 등록법)** : 개인사업자, 동업자 등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

○ **Control of Manufacture Act** : 특정분야 제조업 영위의 경우 기업설립 이전의 허가 획득 절차 및 대상에 대한 규정

○ **Income Tax Act(소득세법)** : 소득세와 관련된 부과기준, 세액공제, 과표 산출, 세율 등에 관한 규정

○ 기타 : **노동법(Labor Act), 산업관련법(Industrial Relation Act), 환경법 (Environment Law) 등**

7 투자 환경

부존자원과 자본이 없는 싱가포르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매력적인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진출해 있다.

외국 투자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GDP, 고용, 수출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투자매력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친 비즈니스 환경, 탁월한 인프라스트럭처, 정치·사회적 안정성, 편리한 생활여건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강점이다. 투자 매력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정책을 취해온 싱가포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 되어있고, 외국자본을 자국자본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처로 활용되어왔다.

○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및 친비즈니스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 친비즈니스 환경

○ 78년부터 외환시장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외국인 투자가의 과실 송금은 물론 배당금, 이자,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도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 또한 법인설립요건은 최소 자본금 1불, 현지거주 이사 1인 등으로 최소화 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를 요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1일이 소요되며,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도 2~4주가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간소화 되어 있다.

○ 법인세는 17%, 소득세가 0~20% 로 세율이 낮은 편이며, 허가를 요하는 업종이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기업에게 제한되는 업종 또한 방위산업, 방송산업 등에 국한되는 등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 하여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탁월한 인프라 스트럭쳐

○ 싱가포르는 세계 수준의 항만 공항시설 및 운영체계를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해상 및 항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 운송 및 물류산업은 싱가포르 GDP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9,000개 이상의 물류기업들이 등록되어 있고, 다수의 기업이 싱가포르를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으며, 3자 물류(3PL, Third-Party Logistics) 분야 전 세계 TOP 25개 기업 중 17개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등 물류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 세계은행(World Bank)이 총 800여 개의 국제 화물운송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물류수행지표(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조사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2012년 유럽최대의 항구인 네덜란드, 독일 등을 제치고 물류허브 1위의 입지를 차지하였다.

<2010년 ~ 2014년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순위[9]>

나라명	2010		2012		2014	
	평점	순위	평점	순위	평점	순위
Germany	4.11	1	4.03	4	4.12	1
Netherlands	4.07	4	4.02	5	4.05	2
Belgium	3.94	9	3.98	7	4.04	3
United Kingdom	3.95	8	3.90	10	4.01	4
Singapore	4.09	2	4.13	1	4.00	5
Sweden	4.08	3	3.85	12	3.96	6
Norway	3.93	10	3.68	21	3.96	7
Luxembourg	3.98	5	3.82	15	3.95	8

○ 또한 탁월한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공업 인프라가 완전히 구비된 다양한 형태의 공장시설을 구비해 왔다. 이 밖에도 금융서비스 기능이 정비되어 있어 현지 금융을 외국인 투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14년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IDI) 순위에 따르면 광대역통신망 보급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 싱가포르가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IDI 2013 순위[10]>

순위	나라	IDI 점수	순위	나라	IDI 점수
1	덴마크	8.86	7	네덜란드	8.38
2	한국	8.85	8	핀란드	8.31
3	스웨덴	8.67	9	홍콩	8.28
4	아이슬란드	8.64	10	룩셈부르크	8.26
5	영국	8.50	16	**싱가포르**	7.90
6	노르웨이	8.39			

9) 자료원 : World Bank
10) 자료원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코트라

4. 산업단지

○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관리공단격인 JTC(www.jtc.gov.sg)는 싱가포르의 투자유치 기관인 경제 개발청(EDB/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 분사해 싱가포르 내 산업단지 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 JTC의 관리대상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land)와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공장(ready-built factories)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화학, 바이오 메디컬, 반도체, 물류 등 산업별 클러스터로도 구분할 수 있다.

○ Tuas Biomedical Park(TBP)는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산업 제조 허브로서 주요제약, 생명 공학 및 의료기술 기업의 개발 및 생산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도로, 송전선, 통신선, 하수시설, 수도 및 가스 공급 등 필수적인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으며 제3자 사업자가 증기, 천연가스, 냉각수, 쓰레기 처리 서비스 등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다.

○ CleanTech Park는 싱가포르 최초 친환경 산업단지로 자연환경과 지역의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녹색 및 도시 솔루션을 개발 및 시험하고,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구축해 청정기술 기업뿐 아니라 녹색실천 기업들도 입주 가능하다.

○ 싱가포르의 에너지 및 화학사업의 핵심지역인 Jurong Island는 세계적인 수준의 화학허브로 100여개의 석유 화학 및 정밀 화학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주요공업용(공장) 부지 분양 및 임대 비용(국가산업단지 기준,sm²당)[11]>

(단위 : 싱달러, 2015.1월 기준)

지역(단지명)	분양비(30년 단위)	임대료/연(3~30년)
Tuas Biomedical Park	243~307	14.84~19.38
Changi Business Park	671-1346	50.46-91.76
International Business Park	671-1346	50.46-91.76
Tuas View	237-296	14.39-16.65
Tukang Innovation Park	378-658	22.79-34.40
Changi North	341-1051	21.60-53.45
Seletar Aerospace Park	288~366	18.55~23.19
CleanTech Park	561	39.00

5. 정치 · 사회적 안정성

○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노사분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87년 이후 파업 또는 폐업 건수가 전무하고 범죄 발생률도 낮은 매우 안정된 사회이다.

○ 현지인들은 외국인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고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1) 자료원 : www.place2lease.com, www.jtc.gov.sg/Product/IndLLand/LongTenure/Pages/OLASPrice.aspx, 코트라

국세청
WWW.NTS.GO.KR

Ⅳ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1.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개요 ····· 41
2. 법인소득세 ····· 41
3. 개인소득세 ····· 66
4. GST(Goods and Services Tax) ····· 73
5. 기타세(Other Taxes) ····· 75
6. 세무조사와 불복제도 ····· 78

<소득세법 최근 주요 개정사항>

□ 법인들이 사업 비용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13 부과연도부터 2015 부과연도까지 3년간 모든 법인에 대해 법인세의 30%(한도 30,000싱가포르달러)를 감액함

□ 창업지원세제인 SUTE(Start up Tax Exemption) Scheme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2월 26일 이후 설립된 부동산 개발회사와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수동소득만을 얻는 지주회사나 관행적으로 부동산 개발건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에 창업지원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임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13 부과연도부터 2015 부과연도까지 적격 투자에 대해 PIC(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Bonus를 지급함

○ PIC Bonus는 적격 투자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3년간 지급한도는 15,000싱가포르달러임

○ 또한 최소 투자금액은 연간 5,000싱가포르달러이어야 함

□ 금융 산업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FSI(Financial Sector Incentive) Scheme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FSI Scheme은 적격 금융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1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개요

가. 조세제도와 관할관청

○ 싱가포르에서 부과되는 직접세의 종류는 기업소득세(company income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재산세(property tax), 인지세(estate duty and stamp duty) 등이 있으며,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다. 간접세로는 상품・서비스세(GST : Goods and services tax)가 있다.

○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인지세, GST에 대해서는 개별세법이 존재한다. 위의 세금을 관할하는 기관은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이다.

2 법인소득세

가. 납세의무자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은 국내원천소득과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원천소득은 발생된 때에, 국외원천소득은 싱가포르로 송금된 때 또는 송금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 법인세법상 거주자는 그 사업의 주된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싱가포르 내에 있는 기업이다. 사업의 주된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란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열리는 장소를 의미한다.

○ 비거주자는 이자, 사용료, 기술용역수수료, 유형자산임대료 등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은 17% 단일세율이나 실지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은 더 낮다. 법인세법상 부분조세감면제도와 신규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나. 과세기간 및 부과연도

○ IRAS는 법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한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등을 평가하는데 이 회계연도가 과세기간(Basis Period)이며 보통 직전연도 12개월이다.

○ 부과연도(Year of Assessment ; YA)는 소득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해이다. 회계연도 2014년의 소득은 YA 2015년에 과세된다.

Ex01) 회계연도별 과세기간과 부과연도

회계연도 종료일	과세기간	YA
매년 3월 31일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2015
매년 6월 30일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2015
매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

○ 신설 법인의 YA도 위와 같이 적용된다. 회계연도 중간에 설립하면 최초 회계연도가 12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각 YA의 수입과 비용을 구분하여야 한다.

Ex02) 2013.04.15.일 설립한 신설 법인이 회계연도 종료일이 매해 6월 30일인 경우 과세기간은?

- 1st YA(2014) : 2013.04.15. ~ 2013.06.30.
- 2nd YA(2015) : 2013.07.01. ~ 2014.06.30.

다. 과세 대상 소득

○ 싱가포르 소득세법(SITA)은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이익
- 배당, 이자, 임대등 투자로 인한 소득
- 로열티, 프리미엄 등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
- 소득 성격의 기타 이익

○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양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차익 등 자본 이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IRAS는 자본거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싱가포르는 1단계 법인세 과세 방식(one-tier corporate tax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1단계 법인세 과세 방식(one-tier system)이란 기업이 자신의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금이 되는 방식이다. 즉, 1단계 법인세 과세 방식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인 법인에 의해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라. 비과세 소득

○ 싱가포르의 거주자는 국외원천배당, 해외자회사이익, 국외원천용역소득에 대해서 2004.01.01. 이후 싱가포르로 송금된 것에 대하여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된다. 요건이란 소득의 원천 국가의 최고 법인세율이 적어도 15% 이상이고 외국원천소득이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선박회사의 선박이익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국제선박의 경우 ① 승객, 우편, 가축 및 물품의 운송 ② 예인 및 인양 작업의 수행 ③ 선박의 임대 ④ 준설선 또는 오일 및 가스 활동에 사용되는 대형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다.

마. 공제되는 비용

○ 사업 비용은 CPF, 기부금, 임금, 수리비, 광고비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지불한 비용이다.

○ 공제가능한 비용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 소득을 창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에 의존하는 우발채무는 비용이 아니다. 즉,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불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된 비용만 공제 가능하다.
- 자본적 지출이 아니어야 한다.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가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 공제되지 않는 비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용과 고정자산 구입 및 자본적 지출과, 여행·유흥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 경비를 포함한다.

바. 신고절차

○ 모든 법인은 매년 IRAS에 아래의 두가지 신고를 해야 한다.

- 추정과세표준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법인소득세 신고 : 휴업 법인을 제외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Form C-S / C를 제출(전자신고는 12월 15일까지)

※ 회계연도 종료일에 따른 납세 Flowchart

EX01)	14.12.31.	15.01.01. ~03.31	ECI 제출 후 1주일 이내	15.11.30. or 12.15.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고지일부터 1개월	고지일부터 2개월
EX02)	14.07.31.	14.08.01. ~ 10.31.					

1. 예상과세소득(ECI) 신고

○ ECI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상과세소득(ECI)을 신고해야 한다.

○ ECI 신고의무 면제대상

- 종료된 회계연도의 연매출이 백만달러 이하이고, YA의 ECI가 'Zero'인 경우는 ECI 제출이 면제된다. ECI 총액이 'Zero'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과세면제제도(partial tax exemption)와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Tax Exemption Scheme New Start-up companies) 적용 전 금액이다.

○ ECI 신고기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일	회계연도 / 과세기간	평가 년도(YA)	ECI 신고기한
매년 3월 31일	2014.04.01. ~ 2015.03.31.	2016	2015.06.30.
매년 7월 31일	2014.08.01. ~ 2015.07.31.	2016	2015.10.31.
매년 12월 31일	2015.01.01. ~ 2015.12.31.	2016	2016.03.31.

○ IRAS는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에 ECI를 제출안내문을 보낸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회사는 회계연도 종요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ECI 신고를 해야 한다.

○ 신설 회사는 설립된 해의 다음 해부터,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에 IRAS로부터 ECI 제출 통지를 받는다. 2014년 중에 설립된 회사는 첫 해에는 통지가 가지 않으므로 자진해서 3개월 이내(2015.03.31.)에 ECI를 신고해야 한다.

○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징수유예(분할납부) 혜택이 주어지며, 조기 신고 장려를 위해 빨리 신고할수록 할부기간이 길어진다. 서면신고 대신 전자신고를 하는 기업에는 더 긴 분할납부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일별 분할납부혜택>

ECI 신고일		분할 납부 개월수	
		서면신고	전자신고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	5
	2개월 이내	8	4
	3개월 이내	6	3
	3개월 경과	없 음	

* GIRO를 이용해 할부납부가 가능하다.

2. 정기 신고 (Form C-S/C)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IRAS에 매년 법인의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서식에는 Form C-S와 Form C 두 가지가 있다. Form C-S는 2012년부터 소규모 회사의 법인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도입되었다.

○ Form C-S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이어야 한다.
- 연매출[12]이 1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 17%의 일반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음 중 하나라도 신청해서는 안된다.
  - 당해 연도 자본 공제/손실에 대한 환급신청
  - 그룹간 손실 이전
  - 투자 공제
  - 연구 개발 (R &D) 세액 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와 원천 과세

12) 매출은 이자와 같은 분리된 소득을 제외한 회사의 주요 수입원을 의미한다.

○ 신고기한 : IRAS은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후 2년 후부터, 매년 4월 서면과 이메일로 신고양식을 회사에 보낸다. 회사는 서면신고는 11월 30일까지, 전자신고는 12월 15일까지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ECI 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세액은 자동으로 환급되며, 많은 경우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서(NOA)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CI 신고와 정기신고 때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많은 경우 IRAS는 해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 신고기한까지 Form C-S/C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IRAS은 회사의 추정소득에 근거하여 납세고지서(Notice of Assessment, NOA)를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IRAS의 추정된 부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부과고지서에 대한 세금은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 세율 및 감면제도

○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이나, 한시적으로 계속기업에 대한 부분적 조세감면, 신설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이보다 낮다.

<계속기업과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단위 : 싱가포르달러)

	YA 2015	YA 2016
기본세율	17%, 연간 $30,000를 한도로 30%의 세금환급혜택이 있음 (YA 2013 ~ 2015)	17%, **연간 $20,000를 한도**로 30%의 세금환급혜택이 있음 **(YA 2016~ 2017)**
계속기업 과세표준 $10,000까지 과세표준 $290,000까지	75% 감면 50% 감면	75% 감면 50% 감면
신규기업(요건충족*) 과세표준 $100,000까지 과세표준 $200,000까지	100% 감면 50% 감면	100% 감면 50% 감면

* 부동산개발업과 투자금융지주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2013.02.26.일 이전에 설립되어야 함

1. 부분조세감면제도

○ 과세표준 SGD300,000까지에 대해 SGD 152,500까지 감면된다.

Ex01) YA 2015년 (회계연도 2014) 계속기업의 법인세 감면 계산
과세표준 $300,000까지 일반적인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부분감면 : - Exempt amount · First S$ 10,000 @ 75% = $ 7,500 · Next S$290,000 @ 50% = $145,000 · Total S$300,000 $152,500

2. 신규기업 세제감면제도 [SUTE(Start up Tax Exemption) Scheme]

○ 신생기업 감면은 부동산개발업과 투자금융지주회사, 2013.2.26.일 이후 설립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생기업에 **3년간**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Ex02) YA 2015년 (회계연도 201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기업의 법인세 감면 계산
과세표준 S$300,00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 - Exempt amount · First S$100,000 @ 100% = $100,000 · Next S$200,000 @ 50% = $100,000 · Total S$300,000 $200,000

[별첨 1] 법인소득세 주요 신고서식 - FORM C

FORM C

Clear F

Income Tax Return for Year of Assessment 2015

Please read the following notes before proceeding:

1 The contents and requirements of Form C may change from year to year. Therefore, **please download and use the correct version of Form C for reporting the company's income.**

2 It is important that you quote the correct Tax Reference No.

3 Please ensure that the following forms are completed before uploading:

	Type of Forms
Company that elects to transfer loss items to Claimant Company under the Group Relief System	1) Form C & IRIN 301 2) Group Relief A
Company that elects to claim loss items from Transferor Company under the Group Relief System	1) Form C & IRIN 301 2) Group Relief B
All other companies	1) Form C & IRIN 301

Key features

4 Please refer to the explanatory notes for guidance to complete Form C. The explanatory notes can be found on IRAS' website under *Home > Businesses > Companies > Filing Taxes (Form C-S/ C) > Guidance on Completing Form C-S/ C > Explanatory Notes to Form C.*

5 ✚ denotes a truncated field with hidden text on printed copy.

When ready to upload form to myTax Portal

6 To e-file Form C,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below:

i) Log in to mytax.iras.gov.sg
ii) Click on the "File Income Tax Return" under "Coporate Tax" on the left hand menu
iii) Select the relevant Year of Assessment
iv) Select "Form C (Upload)"
v) Attach completed Form C (Upload) PDF file and relevant documents (do not attach scanned copy of Form C)
vi) Click on "Submit to IRAS".

7 You may wish to print a copy of the Form C before uploading. Please note that nature of income, country and incentive types will be reflected in codes on printed copy. Negative amount will be denoted with a X.

Filing Mode	Upload Form C to myTaxPortal
Tax Reference No.:	Required Field
Company's Name:	Required Field
Company's Address:	
Place of Control and **Management:**	
Name of Filer:	Required Field
Designation of Filer:	Required Field
Contact Number:	Required Field

30001

2015

FORM C

INCOME TAX RETURN

(The Income Tax Act Cap. 134)

Tax Reference No.:

Comptroller of Income Tax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 1800-3568622
https://www.iras.gov.sg

YEAR OF ASSESSMENT 2015

for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COMPANY'S PARTICULARS

Date 31/03/2015

	Place where control and management is exercised

This Form may take you 20 minutes to complete.
Please get ready the following documents to complete the Form: (i) Accounts (ii) Tax Computation (iii) Detailed Profit and Loss Statement

Please use this Form C to declare the company's income of the preceding year. The completed Form C with other relevant Forms must be submitted **by 30 November 2015.**

The completed Form C and other relevant Forms must be submitted together with

- Audited Accounts or Unaudited Accounts (for companies qualifying for an audit exemption under the Companies Act);
- Detailed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 Tax Computation and Supporting Schedules showing how the tax payable is arrived at.

TAN TEE HOW
Comptroller of Income Tax

Important : Please read the Explanatory Notes before completing the Form

I **Please click where applicable**

1 ☐ The auditors of the company have made a qualification to the audited accounts of the company for the financial year.

2 ☐ The company is claiming enhanced deductions/ allowances and/ or cash payout under the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Scheme.

3 ☐ The company is claiming benefits under the PIC+ Scheme and has met all the qualifying conditions under the Scheme.

Note: IRAS will automatically compute and pay the PIC Bonus if the company has active business operations in Singapore, has employed at least 3 local employees (Singapore citizens or Singapore permanent residents with CPF contributions, excluding shareholders who are directors of the company) in the last month of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and has invested at least $5,000 in PIC qualifying activities. From the Year of Assessment (YA) 2013 to 2015, the maximum PIC Bonus to be paid is capped at $15,000 for all 3 YAs combined.

II **Dormant Company only**

If the company was dormant in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please click on the Box 1 below.

1 ☐ The company had no income and did not carry on any business in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Please click on Box 2, where applicable

2 ☐ The company did not own any investment (e.g. real properties, fixed deposit and foreign shares) in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III **Exempt Private Company only** -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1 Is the company's annual revenue below the prescribed threshold which exempts its accounts from being audited? ☐

2 Please click on the type of accounts the company is submitting ☐ Audited Accounts ☐ Unaudited Accounts

IV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 - The following **must** be completed to claim for the exemption for new start-ups

1 The company satisfies all conditions to qualify for the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 ☐

2 The company's first Year of Assessment (YA) upon incorporation is YA ☐

V **Declaration by person filing the Return**

I declare that this Return gives a full and true account of the whole of the company's income for the preceding year.

Signature and Date	Name	Designation	Contact number

There are penalties for failing to furnish a tax return or furnishing an incorrect tax return.

For Office Use | 1 301 | 2 AC | 3 TC | | | 4 RR | 5 NS |

30002

VI Assessment Information

1 Income Accruing in/ Derived from Singapore (before Exempt Amount)

			Amount (S$)
1a	Trade/ Business Income - Adjusted Profit/ Loss **after**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b/f**,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and Unutilised Losses **b/f** - Section 10(1)(a)	1a	0
1b	Interest/ Discounts - Section 10(1)(d)	1b	0
1c	Trust Distribution (Including REIT Distribution) - Section 10(1)(e) Attach a list showing details of distributions received)	1c	0
1d	Rent, Premiums and any other Profits arising from Property - Section 10(1)(f)	1d	0
1e	Royalties - Section 10(1)(f)	1e	0
1f	Other Income not falling under Boxes 1a to 1e - Section 10(1)(g)	1f	0

2 Foreign Income Received in Singapore (before Exempt Amount)
(Excluding income exempted under the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Scheme)

	Nature of Income	Country		Amount (S$)
2a			2a	0
2b			2b	0
2c			2c	0
2d			2d	0
2e			2e	0
2f			2f	0

3 Total of Boxes 1a to 2f	3	0

4 Loss Transferred to Claimant Company	4	0

5 Carry-Back of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Losses

(To complete only if the company has claimed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Losses against assessable income of the immediate preceding Year of Assessment. Election for Carry-Back is irrevocable. Please submit a revised tax computation for the immediate preceding Year of Assessment.)

			Amount (S$)
5a	Carry-Back of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Losses	5a	0
5b	Has the claim been made previously via the Election Form for Carry-Back of Capital Allowances and Trade Losses?	5b	
5c	Is there a change in the principal activities of the company during the basis periods relating to the current and immediate preceding YAs?	5c	
5d	Is there a substantial change in the company's ultimate shareholders and their shareholdings as at the relevant dates?	5d	

6 Research & Development (R&D) Tax Allowance

				Amount (S$)
6a	R&D Tax Allowance Utilised	6a		0
6b	Qualifying R&D Expenditure	6b	0	

30003

7 Investment Allowances

			Amount (S$)
a	Amount unutilised b/f	7a	0
b	Amount for current YA	7b	0
c	Amount utilised	7c	0
d	Amount unutilised c/f	7d	0

8 Chargeable Income (before Exempt Amount) 8 — 0
(See Annex on page 8 of explanatory notes)
(If negative, enter "0")

9 Loss Claimed from Transferor Company 9 — 0

10 Chargeable Income after Group Relief (before Exempt Amount) (Box 8 - Box 9) 10 — 0
(See Annex on page 8 of explanatory notes)
(If negative, enter "0")

11 Chargeable Income in Box 10 above to be taxed at rates other than 17%

	Type of Tax Incentive	Tax Rate (%)		Amount (S$)
11a		0.00	11a	0
11b		0.00	11b	0
11c		0.00	11c	0
11d		0.00	11d	0
11e		0.00	11e	0

12 Tax Set-Offs

			S$ & cts
a	Double Taxation Relief - Normal Rate	12a	0.00
b	Double Taxation Relief - Concessionary Rate	12b	0.00
c	Unilateral Tax Credit	12c	0.00
d	Foreign Tax Credit Pooling	12d	0.00
e	Malaysian Pioneer Relief	12e	0.00

13 Tax Deducted at Source

			S$ & cts
a	Tax Deducted from Interest/ Distribution from REIT	13a	0.00
b	Tax Deducted from Income other than Interest/ Distribution from REIT	13b	0.00

14 Tax Payable/ Repayable

			S$ & cts
a	Tax Payable/ Repayable **before** Remission/ Rebate	14a	0.00 (If repayable, enter negative value)
b	Tax to be Remitted under Sections 92(1) and 92(2) (Do not include Corporate Income Tax Rebate)	14b	0.00
c	Tax Payable/ Repayable **after** Remission/ Rebate	14c	0.00 (If repayable, enter negative value)

IRIN 300/ZZ (1/2015) Page 3

30004

15 Exempt Income/ Loss for Current Year of Assessment
Current year adjusted exempt income/ loss after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and donations, where applicable.

	Type of Tax Incentive		Amount (S$)
15a		15a	0
15b		15b	0
15c		15c	0
15d		15d	0
15e		15e	0
15f		15f	0

VII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Losses/ Donations

16 Did the company claim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Losses/ Donations in Current Year of Assessment (YA) in Part VI? (If yes, please complete Boxes 16a and 16b) — 16 — Required Field

16a Is there a change in the principal activities of the company during the basis period for the current YA? — 16a

16b Is there a substantial change in the company's ultimate shareholders and their shareholdings as at the relevant dates? — 16b

17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Losses/ Donations claimed under Sections 23(5) and/ or 37(16) (To complete only if answer in Box 16b is "Yes") — 17 — 0

		Concessionary Rate (S$)		Normal Rate (S$)
18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b/f	18	0	18	0
19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19	0	19	0
20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c/f	20	0	20	0
21 Unutilised Losses b/f	21	0	21	0
22 Unutilised Losses c/f	22	0	22	0
23 Unutilised Donations b/f	23	0	23	0
24 Unutilised Donations c/f	24	0	24	0

VIII Other Information

	If Yes, give details:	Amount (S$)
25 Income not previously reported (Please submit the relevant revised tax computation)	Required Field	
26 Receipts claimed as not taxable (Including sale of real estate)	Required Field	
27 Expenses claimed on Non-Income Producing Assets (Included in Boxes 1a to 2f)	Required Field	
28 Deferred Expenditure claimed in Boxes 1a to 2f	Required Field	

30005

IX **Capital Allowances/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s/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s (LIA) on New Assets**

		Amount (S$)
29	Qualifying cost of new assets acquired during the year on which capital allowances and/ or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s are/ would be claimed	0
29a	Qualifying cost incurred during the year on the construction or renovation/ extension of approved building(s) or structure(s) on which LIA are/ would be claimed	0

X **Deduction Claimed under Section 14Q for Expenditure on Renovation or Refurbishment Works**

[To complete if the company has claimed a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renovation or refurbishment works (R&R costs) on business premises under Section 14Q]

		Amount (S$)
30	Qualifying R&R costs claimed during the year (not exceeding $300,000 during the relevant 3 consecutive basis periods)	0
30a	Including the current YA, has the total claim on qualifying R&R costs during the relevant 3 consecutive basis periods exceeded $300,000?	
30b	Did the company cease the trade, profession or business for which a deduction of R&R costs was claimed during the current year?	

XI **Withholding Tax under Section 45/ 45A/ 45B/ 45D/ 45F/ 45GA/ 45H**

31	Was there any amount paid or payable to non-residents falling under Section 45/ 45A/ 45B/ 45D/ 45F/ 45GA/ 45H of the Income Tax Act that is not specifically exempt from withholding tax (e.g. unde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 Income Tax Act,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etc.)?	Required Field
31a	If yes, did the company comply with the requirement to withhold tax on the payments?	

31b If the company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 to withhold tax, please state the reason(s):

XII **Data as shown in the Audited/ Unaudited Accounts for the financial year. All items must be completed. If not applicable, enter "0" in the box.**

		Amount (S$)
32 Revenue	32	0
33 Purchases	33	0
34 Gross Profit/ Loss	34	0
35 Inventories	35	0
36 Sal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Excluding amounts in Boxes 37 and 38)	36	0
37 Directors' Fees and Remuneration	37	0
38 Head Office Expenses	38	0
39 Other Receivables	39	0
40 Trade Receivables	40	0
41 Trade Payables	41	0
42 Net Profit/ Loss before Tax	42	0

30101

FORM IRIN 301

This Form may take you 10 minutes to complete.
Please get ready the following documents to complete the Form: (i) Accounts (ii) Tax Computation (iii) Detailed Profit and Loss Statement

YEAR OF ASSESSMENT 2015
ADDITIONAL INFORMATION ON INCOME AND DEDUCTIONS IN PART VI TO XII OF FORM C (FORM IRIN 301)

This Form must be completed and returned with Form C
Important : Please read the Explanatory Notes before completing the Form

Tax Ref No.:

Name of Company:

A	Deductions Claimed Against Income		Amount (S$)
1	Medical expenses (expenses incurred in or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medical treatment) - Section 14(5)	1	0
2	Total remuneration excluding Directors' Fees and Remuneration (i.e. salaries, leave pay, commissions, bonuses, gratuities, allowances, CPF; excluding benefits-in-kind, medical expenses and cash allowances in lieu of medical expenses)	2	0
3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 Section 14D	3	0
4	Enhanced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 Section 14DA(1)	4	0
5	Further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 Section 14E	5	0
6	General provisions for doubtful debts and diminution in value of investments by banks or qualifying finance companies - Section 14I	6	0
7	Provision for impairment losses claimed by bank	7	0
8	Further deduction for expenses incurred in relocation or recruitment of overseas talent - Section 14L	8	0
9	Deduction for special reserve of Approved General Insurance - Section 14O	9	0
10	Deduction for expenditure incurred on Renovation or Refurbishment works - Section 14Q	10	0
11	Mergers and Acquisitions Allowance - Section 37L	11	0

B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Claimed as per Tax Computation		
a.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s**		
12	Total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s (IA + AA + BA - BC)	12	0
b.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s**		
13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s (IA)	13	0
14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s (AA)	14	0
c.	**Capital Allowances**		
	Section		Total Allowances/ Charges (S$)
15	19 and 19A(2B)	15	0
16	19A(1), 19A(1B) and 19A(2B)	16	0
17	19A(2), 19A(2B), 19A(3), 19A(4) and 19A(10A)	17	0
18	19B	18	0

30102

FORM IRIN 301

C **Foreign Tax Paid on Foreign Income Received in Singapore**

	Nature of Income	Country		Amount of Foreign Tax Paid S$ & cts
19a			19a	0.00
19b			19b	0.00
19c			19c	0.00
19d			19d	0.00
19e			19e	0.00
19f			19f	0.00

D **Exemption on Foreign Dividends, Branch Profits and Service Income Received in Singapore**

	Nature of Income	Country	Headline Tax Rate (%)	Amount of income received in Singapore (Net of foreign tax paid/ payable) S$	Income subject to tax in the country from which it was received (Yes = 1, No = 2)	Income exempt from tax as a result of incentive granted by foreign jurisdiction* (Yes = 1, No = 2)
20a				0		
20b				0		
20c				0		
20d				0		
20e				0		
20f				0		

*To complete only if "NO" is indicated under the column "Income subject to tax in the country from which it was received"

E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PIC+ Scheme**

			Total cost incurred (after netting off government grants received and excluding amounts converted to Cash Payout) Amount (S$)	Enhanced Deductions/ Allowances claimed/ to be claimed (300% of qualifying cost or 250% of qualifying cost for R&D conducted in Singapore) Amount (S$)
21	PIC IT and automation equipment - Sections 14T, 19A(2B)	21	0	0
22a	In-house training not certified by WDA or ITE - Section 14R	22a	0 (capped at $10,000)	0
22b	External and certified in-house training - Section 14R	22b	0	0
2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quisition and in-licensing - Sections 14W, 19B(1B)	23	0	0
24	Patents, trademarks, designs and plant varieties registration - Section 14A	24	0	0
25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 Sections 14D, 14DA	25	0	0
26	Approved design projects - Section 14S	26	0	0

F **Exemption of Gains from Disposal of Ordinary shares in Another Company under Section 13Z**

			Amount (S$)
27	The amount of gains derived from disposal of ordinary shares that meet the specified conditions	27	0

Form GR-A
Group Relief Form for Transferor Company for Year of Assessment 2015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mportant: - Group relief is available to Singapore incorporated companies belonging to the same group and which have the same financial year end.
- This Form must be submitted together with the Form C.
- Please read IRAS e-Tax Guide "Group Relief System" before completing this Form.
- Please refer to "Items that do not qualify for transfer under the GR system" on IRAS' website (www.iras.gov.sg).

Note: - This Form may take you 10 minutes to fill in.
- Please get ready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fill in the Form:
  - Details of the transferor company (see Part 1)
  - Details of the claimant companies (see Part 3)

Part 1 Details of transferor company

Name: _____

Tax Ref. No.: _____

Total loss items transferred[1]: 0

Part 2 Declaration

I declare that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are maintained at or above 75% during the continuous period[2] stated in Part 3 and all information given in this Form is true and complete.

I understand that I need to retain my computation on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as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 may request for it.

Please confirm by checking the following checkboxes:

My company is

- ☐ **Not** a company that has not been carrying on any business (i.e. dormant) for the Year of Assessment.
- ☐ **Not** an investment holding company transferring current year unutilised losses which arose from excess of expenses over investment income.
- ☐ **Not** a compan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0E of the Income Tax Act, transferring current year unutilised losses or capital allowances [except for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s or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s].

Group relief cannot be claimed if the company is one of the three mentioned types of company.

Signature and Date	Name	Designation	Contact number

Part 3 Details of claimant companies in order of priority

Order	Details	Loss items transferred[3]		Continuous period[2]
1	Name:	Unabsorbed CA (NTR)	0	From: dd/mm/yyyy
	Tax Ref. No.:	Unabsorbed CA (CTR)	0	
		Unabsorbed loss (NTR)	0	To: dd/mm/yyyy
		Unabsorbed loss (CTR)	0	
		Unabsorbed donation (NTR)	0	
		Unabsorbed donation (CTR)	0	

1 Total refers to the aggregate quantum of the loss items transferred as listed under Part 3.

2 Continuous period refers to the period ending on the last day of the basis period during which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is maintained at or above 75%.

3 The quantum to be completed here is based on tax computation submitted with Form C before S37B adjustment.

NTR = Normal corporate tax rate CTR = Concessionary tax rate

Under the Singapore Income Tax Act, there are penalties for making a false or incorrect declaration.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ephone: 1800-356 8622 Facsimile: 6351 4360 https://www.iras.gov.sg

Form GR-A

Group Relief Form for Transferor Company for Year of Assessment | 2015 |

Tax Ref. No. : | |

Part 3 Details of claimant companies in order of priority

Order	Details	Loss items transferred[3]		Continuous period[2]
2	Name:	Unabsorbed CA (NTR)	0	From: dd/mm/yyyy
		Unabsorbed CA (CTR)	0	
		Unabsorbed loss (NTR)	0	To: dd/mm/yyyy
	Tax Ref. No.:	Unabsorbed loss (CTR)	0	
		Unabsorbed donation (NTR)	0	
		Unabsorbed donation (CTR)	0	
3	Name:	Unabsorbed CA (NTR)	0	From: dd/mm/yyyy
		Unabsorbed CA (CTR)	0	
		Unabsorbed loss (NTR)	0	To: dd/mm/yyyy
	Tax Ref. No.:	Unabsorbed loss (CTR)	0	
		Unabsorbed donation (NTR)	0	
		Unabsorbed donation (CTR)	0	
4	Name:	Unabsorbed CA (NTR)	0	From: dd/mm/yyyy
		Unabsorbed CA (CTR)	0	
		Unabsorbed loss (NTR)	0	To: dd/mm/yyyy
	Tax Ref. No.:	Unabsorbed loss (CTR)	0	
		Unabsorbed donation (NTR)	0	
		Unabsorbed donation (CTR)	0	
5	Name:	Unabsorbed CA (NTR)	0	From: dd/mm/yyyy
		Unabsorbed CA (CTR)	0	
		Unabsorbed loss (NTR)	0	To: dd/mm/yyyy
	Tax Ref. No.:	Unabsorbed loss (CTR)	0	
		Unabsorbed donation (NTR)	0	
		Unabsorbed donation (CTR)	0	

Form GR-B
Group Relief Form for Claimant Company for Year of Assessment 2015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mportant:
- Group relief is available to Singapore incorporated companies belonging to the same group and which have the same financial year end.
- This Form must be submitted together with the Form C.
- Please read IRAS e-Tax Guide "Group Relief System" before completing this Form.
- Please refer to "Items that do not qualify for transfer under the GR system" on IRAS' website (www.iras.gov.sg).

Note:
- This Form may take you 10 minutes to fill in.
- Please get ready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fill in the Form:
  - Details of the claimant company (see Part 1)
  - Details of the transferor companies (see Part 3)

Part 1 Details of claimant company

Name: _____

Tax Ref. No.: _____

Part 2 Declaration

I declare that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are maintained at or above 75% during the continuous period[1] stated in Part 3 and all information given in this Form is true and complete.

I understand that I need to retain my computation on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as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 may request for it.

Signature and Date	Name	Designation	Contact number

Part 3 Details of transferor companies in order of priority

Order	Name	Tax Ref. No.	Continuous period[1]
1			From dd/mm/yyyy To dd/mm/yyyy
2			From dd/mm/yyyy To dd/mm/yyyy
3			From dd/mm/yyyy To dd/mm/yyyy
4			From dd/mm/yyyy To dd/mm/yyyy
5			From dd/mm/yyyy To dd/mm/yyyy
6			From dd/mm/yyyy To dd/mm/yyyy
7			From dd/mm/yyyy To dd/mm/yyyy

[1] Continuous period refers to the period ending on the last day of the basis period during which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is maintained at or above 75%.

Under the Singapore Income Tax Act, there are penalties for making a false or incorrect declaration.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ephone: 1800-356 8622 Facsimile: 6351 4360 https://www.iras.gov.sg

[별첨 2] 법인소득세 주요 신고서식 - FORM C/S

FORM C-S

Income Tax Return For Year of Assessment 2015

Please read the following notes before proceeding:

1 The contents and requirements of Form C may change from year to year. **Please download and use the correct version of Form C-S to report your income.**

2 It is important that you quote the correct Tax Reference No. and Document Identification Number (DIN).
The DIN is unique for each document and is different for each Year of Assessment.

3 DIN.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target=PORDINSearch

4 Form C-S must be printed in black ink on white paper, taking up full page of the A4 or letter-sized paper.

5 Use 80 grams paper to print the forms.

6 If any of the above requirement is not adhered to, the submitted forms will be rejected. In such an instance, the company will be requested to re-submit the forms with the correct format/ layout.

How to complete Form C-S

7 Please refer to the explanatory notes for guidance to complete Form C-S. The explanatory notes can be found on IRAS's website under *Home >Businesses > Companies > Filing Taxes (Form C-S/ C) > Guidance on Completing Form C-S/ C > Explanatory Notes to Form C-S.*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Filing-Taxes--Form-C-S-Form-C-/Guidance-on-Completing-Form-C-S/-C/

When ready for submission

8 Print and sign on form.

9 Do **not** print this page for submission.

Please enter Company's Particulars as shown on Page 1 of original Form C-S:

***Tax Reference Number**	
***Company Name**	
Address	
Place of Control & Management	
***DIN**	

E.g. SC 206 16264567890 023

국세청 WWW.NTS.GO.KR

30001

Tax Reference Number:

2015
Form C-S

INCOME TAX RETURN

(The Income Tax Act Cap. 134)

It may take you 10 minutes to complete this Form. Please get ready your accounts for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and tax computation to fill in the Form. Please complete clearly in black ink.

YEAR OF ASSESSMENT 2015
Please use this Form to declare the company's income for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Date of Issue: 31-03-2015

Place where control and management is exercised

Please fill in Name at DIN worksheet

Please submit by: 30 November 2015.

Qualifying Conditions for submitting Form C-S

Before you complete this Form, please indicate whether the company meets the qualifying conditions for submitting Form C-S:
(Enter 'X' if condition is met)

a. ☐ Singapore-incorporated company

b. ☐ Revenue is S$1,000,000 or below

c. ☐ Derives only income taxable at 17%

d. ☐ **NOT** claiming/ utilising any of the following items:
- i. Carry-back of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Losses
- ii. Group Relief
- iii. Investment Allowance
- iv.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Allowance
- v. Foreign Tax Credit and Tax Deducted at Source

You are eligible to submit Form C-S only if all the above 4 qualifying conditions are met. You do **not** need to submit your accounts, tax computation, supporting schedules or original receipts with this Form. Please retain them and submit to IRAS only upon request. If you are not eligible to submit Form C-S, please submit Form C, accounts, tax computation and supporting schedules instead.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1800-356 8622 www.iras.gov.sg

TAN TEE HOW
Comptroller of Income Tax

Declaration by person filling the Return

The company has met all the qualifying conditions to submit Form C-S and this Return gives a full and true account of the whole of the company's income for the preceding year.

(The authorised persons who can sign this declaration are the company director, principal officer or a person authorised by the company)

Name : _____ **Contact number** : _____

Signature and date : _____ **Designation** : _____

(Original signature required)

There are penalties for failing to furnish a tax return or furnishing an incorrect tax return.

Dormant Company Only

If the company was dormant in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please enter 'X' in Box A below.

A. ☐ The company had no income and did not carry on any business in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Please enter 'X' in Box B below, if applicable.

B. ☐ The company did not own any investment (e.g. real properties, fixed deposit and foreign shares) in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If the company has Unutilised Losses brought forward, please also complete Boxes 14 and 20 on Page 2 of this Form. Otherwise, you only need to complete up to this section on Page 1 of this Form.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 (PIC+) Scheme

Please enter 'X' in Box C below, if applicable.

C. ☐ The company is claiming benefits under the PIC+ Scheme and has met all the qualifying conditions under the Scheme.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Bonus

IRAS will automatically compute and pay the PIC Bonus if the company has active business operations in Singapore, has employed at least 3 local employees (Singapore citizens or Singapore permanent residents with CPF contributions, excluding shareholders who are directors of the company) in the last month of the financial year ending in 2014, and has invested at least S$5,000 in PIC qualifying activities. From the Year of Assesment (YA) 2013 to 2015, the maximum PIC Bonus to be paid is capped at S$15,000 for all 3 YAs combined.

For Office Use	1	2	AC	3	TC

30002

Section 1: Tax Adjustments
(All fields are compulsory)

			S$ (exclude cents)
Net Profit/ Loss before Tax as per Accounts	1	*(Enter 'X' for Net Loss) *	
Less:			
Separate Source Income	2		
Non-Taxable Income	3		
Add:			
Non-Tax Deductible Expenses	4		
Adjusted Profit/ Loss before Other Deductions (Box 1 - Box 2 - Box 3 + Box 4)	5	*(Enter 'X' if the amount is negative) *	
Less:			
Deduction for Renovation or Refurbishment Works under Section 14Q	6		
Enhanced Deductions under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PIC+ Scheme *for training; leasing of PIC IT and automation equipment; in-licensing/ reg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D; approved design projects*	7		
Further Deductions	8		
Adjusted Profit/ Loss before Capital Allowances (Box 5 - Box 6 - Box 7 - Box 8)	9	*(Enter 'X' if the amount is negative) *	
Add:			
Balancing Charge	10		
Less: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brought forward	11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excluding Enhanced Allowances under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PIC+ Scheme*	12		
Enhanced Allowances under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PIC+ Scheme *for acquisition of PIC IT and automation equip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3		
Unutilised Losses brought forward	14		

Add: Separate Source Income (Boxes 15c, 16 and 17)

		S$ (exclude cents)
Gross Rental Income	15a	
Less: Deductible Expenses	15b	
Net Rental Income (Box 15a - 15b. Enter '0' if the amount is negative)	15c	
Interest Income	16	
Other Taxable Income	17	
Total Income/ Losses before Donations (Total of Boxes 9 and 10 - Total of Boxes 11 to 14 + Total of Boxes 15c to 17)	18	*(Enter 'X' if the amount is negative) *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carried forward	19	
Unutilised Losses carried forward	20	

국세청 WWW.NTS.GO.KR

30003

S$ (exclude cents)

Section 2: Information from Financial Statement
(All fields are compulsory)

Revenue			21	
Gross Profit/ Loss	22	*(Enter 'X' for Gross Loss)	*	Revenue refers to the main in e of the company.
Directors' Fees and Remuneration			23	
Total Remuneration excluding Directors' Fees and Remuneration			24	
Medical Expenses (Enter the deductible amount)			25	
Transport/ Travelling Expenses			26	
Entertainment Expenses			27	
Inventories			28	
Trade Receivables			29	

Section 3: Deduction of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Losses/ Donations Brought Forward
(To be completed if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Losses/ Donations brought forward are claimed against income of the current Year of Assessment)

Is there a substantial change in the company's ultimate shareholders and their shareholdings as at the relevant dates?	30	(Yes = 1 No = 2)	
Is there a change in the principal activities of the company during the basis period?	31	(Yes = 1 No = 2)	

Section 4: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
(To be completed if the company is claiming tax exemption for new start-up companies)

Has the company satisfied all conditions to qualify for the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	32a	(Yes = 1 No = 2)	
The company's first Year of Assessment (YA) upon incorporation	32b	YA	

Section 5: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PIC+ Scheme (Total Cost Incurred)
(To be completed if the company has incurred PIC qualifying expenditure. Enter the total cost incurred for each of the following activities. Total cost is derived after excluding grant/ subsidy from the Government/ Statutory Board and amount converted to Cash Payout)

		S$ (exclude cents)			S$ (exclude cents)
PIC IT and Automation Equipment and Leasing	3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quisition and In-Licensing**	36	
In-house Training not Certified by WDA or ITE (capped at $10,000)	34		**Patents, Trademarks, Designs and Plant Varieties Registration**	37	
External and Certified In-house Training	35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38	
			Approved Design Projects	39	

END OF FORM

[별첨 3] 법인소득세 주요 신고서식 - ECI FORM

32001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Year of Assessment 2016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m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mportant: Please read the Explanatory Notes before completing this Form

Note: - This Form may take you 5 minutes to fill in.
- Please get ready the company's particulars, revenue figure and estimated chargeable income to fill in the Form.

Submit the company's ECI via myTax Portal at https://mytax.iras.gov.sg to maximise the number of instalments allowable on tax arising from the company's ECI. For details,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iras.gov.sg.

Tax reference number: _____

Name of company: _____

Section A: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
(To be completed only if the company qualifies for the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companies.)

The company qualifies for the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companies. _____ (Yes = 1 No = 2)

If the company qualifies for the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companies, the company declares that:
a) it is incorporated in Singapore;
b) it is a tax resident of Singapore for Year of Assessment (YA) 2016;
c) it has no more than 20 shareholders throughout the basis period for YA 2016
   i) all of whom are individuals beneficially and directly holding the shares in their own names; or
   ii) where there are non-individual shareholders, at least one shareholder is an individual beneficially and directly holding at least 10% of the issued ordinary shares of the company;
d) If it is incorporated after 25 Feb 2013,
   i) its principal activity is not that of developing properties for sale, for investment, or for both investment and sale; and
   ii) its principal activity is not that of investment holding.

The company's first YA upon incorporation is: _____ (yyyy)
(Please refer to Note 3 of Explanatory Notes)

Section B: Revenue

	S$
Revenue*	

* Refers to the main income source of a company as reflected in its profit and loss account. For instance, the revenue of a trading company would be its gross sales and that of an investment company would be its investment income.

Section C: Estimate of Chargeable Income

Tax rate %	ECI S$	
17.00		**
10.00		***
Total ECI	0	

** Only income taxable under the normal corporate tax rate of 17% is eligible for the partial tax exemption scheme or the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companies. Please enter the ECI before deducting the exempt amount under the respective scheme.
*** This line is for reporting incentive income that is taxed at the concessionary tax rate of 10%.

Particulars of person completing the Form:

Full name _____ Designation _____

Contact number _____ Signature and Date _____

Please complete and return the Form within three (3) months after the end of the accounting year.
Under the Singapore Income Tax Act, there are penalties for making a false or incorrect declaration.

IRIN320/2016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별첨 4] 법인소득세 주요 신고서식 – ECI FORM(Tax Agency)

32101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Year of Assessment | 2016 |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m
(For Tax Agent Submitting ECI on Behalf of Its Corporate Client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mportant: Please read the Explanatory Notes before completing this Form

Note: - This Form may take you 5 minutes to fill in.
- Please get ready the company's particulars, revenue figure and estimated chargeable income to fill in the Form.

Submit your client's ECI via myTax Portal at https://mytax.iras.gov.sg to maximise the number of instalments allowable on tax arising from their ECI. For details,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iras.gov.sg.

			Qualifies for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co. (Yes = 1* No = 2)	First YA upon incorporation (yyyy)**	Revenue (S$)	Tax rate (%)	ECI (S$)
1	Tax ref. no.					17.00	
	Name of company					10.00	
2	Tax ref. no.					17.00	
	Name of company					10.00	
3	Tax ref. no.					17.00	
	Name of company					10.00	
4	Tax ref. no.					17.00	
	Name of company					10.00	
5	Tax ref. no.					17.00	
	Name of company					10.00	
6	Tax ref. no.					17.00	
	Name of company					10.00	
	Tax reference number of tax agent firm				0		0

Name of tax agent firm _____

Address of tax agent firm _____

Particulars of person completing the Form:

Full name _____

Contact number _____

Signature and Date _____

* A company qualifying for the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companies declares that:
a) it is incorporated in Singapore;
b) it is a tax resident of Singapore for Year of Assessment (YA) 2016;
c) it has no more than 20 shareholders throughout the basis period for YA 2016
   i) all of whom are individuals beneficially and directly holding the shares in their own names; or
   ii) where there are non-individual shareholders, at least one shareholder is an individual beneficially and directly holding at least 10% of the issued ordinary shares of the company;
d) if it is incorporated after 25 Feb 2013,
   i) its principal activity is not that of developing properties for sale, for investment, or for both investment and sale; and
   ii) its principal activity is not that of investment holding.

** Please refer to Note 3 of Explanatory Notes.

Under the Singapore Income Tax Act, there are penalties for making a false or incorrect declaration.

IRIN321/2016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3 개인소득세

가. 납세의무자

○ 직전 YA 1년(Basis Period)중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 또는 체류하거나 18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 1년의 거주기간이 183일에 못 미치더라도 2007.1.1. 이후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2년에 걸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2개의 YA 모두 Tax Resident로 분류된다. 거주 여부는 체류기간, 근무장소, 근무기간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 2015.11.3~2015.5.7일까지 체류한 경우
- 2015.11.3~2015.12.31 : 59일 ⇨ YA2016 tax resident
- 2016.1.1~2016.5.7 : 128일 ⇨ YA2017 tax resident

나. 과세대상소득

○ 싱가포르에서 받은 또는 발생된 모든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2004.01.01.일 이후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해외소득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아니다.

○ 국내원천소득(Income Accruing in or Derived from Singapore)과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수취한 소득(Income Received in Singapore from Outside Singapore)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 소득의 유형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투자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1. 사업소득

○ 판매(Trade), 사업(Business), 전문직(Profession), 천직(Vocation)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수익

2. 근로소득

○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부여된 급여(Wages and Salary), 휴가급여(Leave Pay), 보수(Fee), 수수료(Commission), 상여금, 팁, 특전(Perquisite) 또는 수당(Allowance)

○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지급한 식료품, 의류, 숙소(Lodging)에 대한 가치

○ 고용주가 제공한 거주지(Place of Residence)의 연간가치(Annual Value)

○ 근로자가 퇴직 시 수급자격이 있는 공적연금, 공제기금, 단체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근로를 원인으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배당·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법인의 수익에 대한 지분으로서 법인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등가물이며 자본의 환급을 제외한다. 청산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잔여재산의 분배금도 배당소득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

○ 거주자가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외 원천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된다. 국내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게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개인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 법인이 지급하는 국외원천 배당금은 비과세되지만, 거주자가 국내 파트너십을 통해 국외원천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과세된다.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상 '금전의 사용에 대한 시간당 대가(Payment by time for the use of money)'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이자소득의 원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득세법은 1970년대부터 간주원천규정(Deemed Source Rule)을 두고 있다.

○ 승인된 은행(Approved Bank)이나 인가받은 금융회사(Licensed Finance Company)에 예치한 예금이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비과세되므로 비승인된 은행이나 인가받지 않은 금융회사에의 예금,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 과세된다.

○ 또한 채무증권의 이자도 국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얻은 경우 또는 채무증권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한편,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의 수취일이 아닌 이자를 수취 받을 자격이 부여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연금소득

○ 공적연금은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로서 지급주기는 월, 분기, 년으로 나누어지며, 일 시급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Charge는 지급의무자의 소득에 대해 법적인 수단에 의해 담보된 지급금을 의미하고, 법원의 명령이나 별거증서(Deed of Separation)에 따라 지급받은 이혼수당(Alimony)이나 생활비는 Charge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 사적연금(Annuity)은 매년 반복되어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보험계약, 증여나 유산, 자산매각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환급에 대해 매년 반복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적연금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5. 재산소득

○ 월세(Rent), 로열티, 보증금(Premium)과 그 밖에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한다. 월세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반면, 보증금(Premium)은 임대 실행 또는 임대계약에 대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보통 일시불로 지급로열티의 일반적인 의미는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로 단위기준(Unit Basis)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기타소득

○ 앞에서 제시한 5가지의 소득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의 성격을 가진 모든 이익이나 수익(Any gains or profits of an income nature)'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다. 비과세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2004.1.1. 이후 거주자가 받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싱가포르 파트너쉽을 통해 받은 소득은 제외)
- 외국 국가의 영사관과 영연방(Commonwealth Countries)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공무원 보수(단,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제를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됨)
- 싱가포르에 주둔하는 영연방 군인과 싱가포르에서 영연방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영연방기금에서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 (단, 이러한 공무원 보수는 영연방 국가에서 과세되는 경우일 것)
- 사망위로금,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통합보상
- 지역 군인에 대해 공공재정에서 지출하는 연간 포상금으로서 장관이 명령에 의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선언한 경우

- 싱가포르 국적 선박에 승선하여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근로가 제공된 경우의 근로소득

○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 2005.1.1일 이후 승인된 은행(Approved Bank)이나 인가받은 금융회사(Licensed Finance Company)에 예치한 예금이자
- 2004.1.1일 이후 채무증권에서 발생한 개인의 이자 중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 국내 파트너십을 통한 이자소득은 제외됨
- 2004.1.1일 이후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소득(파트너십을 통해 수취한 경우 제외), 증권선 물법에 따라 2004.1.1일 이후에 단위신탁(Unit Trusts) 및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 1단계 법인과세 방식(One-tier Corporate Tax System)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1단계 면제 배당소득

라. 세율 : 초과누진세율 구조

<개인소득세(거주자) 초과누진세율*>

(단위 : 싱가포르달러(S$), %)

YA 2015 ~ 2016		YA 2017	
소득구간	세율	소득구간	세율
0 ~ 20,000	0.0	0 ~ 20,000	0.0
20,001 ~ 30,000	2.0	20,001 ~ 30,000	2.0
30,001 ~ 40,000	3.5	30,001 ~ 40,000	3.5
40,001 ~ 80,000	7.0	40,001 ~ 80,000	7.0
80,001 ~ 120,000	11.5	80,001 ~ 120,000	11.5
120,001 ~ 160,000	15.0	120,001 ~ 160,000	15.0
160,001 ~ 200,000	17.0	160,001 ~ 200,000	18.0
200,001 ~ 320,000	18.0	200,001 ~ 240,000	19.0
320,001 ~	20.0	240,001 ~ 280,000	19.5
		280,001 ~ 320,000	20.0
		320,001 ~	22.0

*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YA2017년부터 개인소득 과세표준 160,000SGD를 초과하는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인상되었다.

○ 비거주자 소득세율의 15%이며, 산출세액이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적을 때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종합소득에서 배우자, 자녀, 장애, 경로우대, 교육비, 보험료 등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한다.

○ Foreign Maid Levy에 대해 2009년부터 연간 S$6,360 또는 S$4,080 한도로 연간 부담금의 2배를 소득공제(독신여성 및 남성은 제외)

바. 신고절차

○ 신고 및 납부

- 근로자는 익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4월 18일까지 전자신고
- 고용주는 익년 3월 1일까지 근로자 또는 과세당국에 근로자의 급여 신고서(Form IR8A)를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수가 12명 이상 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과세당국에 제출함)

○ 부과 : 납세의무자가 법률에서 정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과거부과내역, 유사업종 평균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推計)하여 과세할 수 있다.

○ 제척기간 : 신고기한이 속한 연도 말로부터 4년이다.

○ 이의신청 : 부과처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별첨 5] 개인소득세 주요 신고서식 - FORM IR8A

2016 **FORM IR8A**

Return of Employee's Remuneration for the Year Ended 31 Dec 2015
Fill in this form and give it to your employee by 1 Mar 2016 for his submission together with his Income Tax Return

This Form will take about 10 minutes to complete. Please get ready the employee's personal particulars and details of his/her employment income. Please read the explanatory notes when completing this form.

Employer's Tax Ref. No. / UEN	Employee's Tax Ref. No. : *NRIC / FIN (Foreign Identification No.)		
Full Name of Employee as per NRIC / FIN	Date of Birth	Sex	Nationality
Residential Address	Designation	Bank to which salary is credited	
If employment commenced and/or ceased during the year, state: **(See Explanatory Note 7)**	Date of Commencement	Date of *Cessation/Overseas Posting	

INCOME (Enter "NA" for items that are not applicable) **$**

a) **Gross Salary, Fees, Leave Pay, Wages and Overtime Pay (See Explanatory Note 12a)**

b) **Bonus** (non-contractual bonus paid in 2015 and / or contractual bonus) **(See Explanatory Note 12b)**

c) **Director's fees** (approved at the company's AGM/EGM on __ /__ / 2015) **(See Explanatory Note 12c)**

d) **Others:**

1. Allowances: (i) Transport (ii) Entertainment $ _____ (iii) Others $ _____ **[See Explanatory Note 12d(I)]**
$ _____ _____ to _____ * Monthly/other than monthly payment

2. Gross Commission for the period

3. Pension

4. Lump sum payment **[See Explanatory Note 12d (II)]**

(i) Gratuity $	(ii) Notice Pay $	(iii) Ex-gratia payment $
(iv) Others (please state nature) $		
(v) Compensation for loss of office $ Approval obtained from IRAS: *Yes/No Date of approval:		
Reason for payment:	**Length of service:**	
Basis of arriving at the payment: (Give details separately if space is insufficient)		

5. Retirement benefits including gratuities/pension/commutation of pension/lump sum payments, etc from
Pension/Provident Fund: Name of Fund _____
(Amount accrued up to 31 Dec 1992 $ _____) Amount accrued from 1993:

6. Contributions made by employer to any Pension/Provident Fund constituted outside Singapore without tax concession:
Contributions made by employer to any Pension/Provident Fund constituted outside Singapore with tax concession :

Name of the overseas pension/provident fund:	
Full Amount of the contributions :	Are contributions mandatory?: *Yes/No
Were contributions charged / deductions claimed by a Singapore permanent establishment ? *Yes/No	

[See Explanatory Note 12d (III)]

7. Excess/Voluntary contribution to CPF by employer (less amount refunded/to be refunded): **[See Explanatory Note 12d (IV)] and complete the Form IR8S)**

8. Gains or profits from Employee Stock Option (ESOP)/other forms of Employee Share Ownership (ESOW) Plans: **[See Explanatory Note 12d (V)] and complete the Appendix 8B)**

9. Value of Benefits-in-kind **(See Explanatory Notes 13 to 16 and complete the Appendix 8A)**:

TOTAL (items d1 to d9)

e) Remission: Amount of Income $..... **(See Explanatory Note 12e)**
Exempt/Non Taxable Income : $..... **(See Explanatory Note 11)**

f)		
Employee's income tax borne by employer? * YES / NO	If yes and fully borne by employer, DO NOT enter any amount in (i) and (ii)	
	(i) If tax is partially borne by employer, state the amount of income which tax is borne by employer	
	(ii) If a fixed amount of tax is borne by employee, state the amount to be paid by employee	

DEDUCTIONS (Enter "NA" for items that are not applicable)

EMPLOYEE'S COMPULSORY contribution to *CPF/Designated Pension or Provident Fund **(less amount refunded/to be refunded)** Name of Fund : _____
(Please apply the appropriate CPF rates published by CPF Board on its website 'www.cpf.gov.sg'. Do not include excess/voluntary contributions to CPF, voluntary contributions to Medisave Account, voluntary contributions to Retirement Sum Topping-up Scheme and SRS contributions in this item)
See Explanatory Note 12 - DEDUCTIONS

Donations deducted from salaries for:
*Yayasan Mendaki Fund/Community Chest of Singapore/SINDA/CDAC/ECF/Other tax exempt donations

Contributions deducted from salaries to Mosque Building Fund :

Life Insurance premiums deducted from salaries:

DECLARATION (See Explanatory Note 4)

Name of Employer :
Address of Employer :

Name of authorised person making the declaration | Designation | Tel. No. | Signature | Date

There are penalties for failing to give a return or furnishing an incorrect or late return.

IR8A(1/2016) *** Delete where applicable**

4 GST (Goods and Services Tax)

가. 납세의무자

○ 과세공급 매출이 SGD 1,000,000를 초과하는 자는 반드시 GST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연간 과세공급 매출이 SGD 1,000,00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GST 사업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부로 허가된다.

○ 과세 매출액이 SGD 1,000,000를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과세기간의 직전 12개월의 매출로 판단한다.

나. 세율 및 과세구분

○ GST는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7%로 부과된다. 재화와 용역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Zero%)이 적용되며, 주거용 자산의 공급 등 일부 거래에는 GST가 면제된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GST가 부과(재화를 수입하는 때)된다. 그러나, 무역업자들의 현금흐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하는 때에 GST 부과를 유예하는 경감제도가 있다.

○ GST 과세와 면세 구분

과 세		면 세	
표준세율 (7%)	영세율, 면세, 적용제외가 아닌 모든 공급	면세	▪ 주거용 자산의 판매 또는 임대 ▪ 금융서비스 ▪ 투자용(골드바 등) 귀금속의 수입 또는 국내 공급
영세율 (0%)	재화의 수출 국제적 용역	GST 적용 제외	▪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의 이전 ▪ 개인간 거래 ▪ 제3국 판매 ▪ Zero GST 창고 내에서의 판매

다.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 GST 등록사업자는 각 GST 회계기간별(분기) 매출액의 7%를 소비자로부터 대리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매출이 없는 경우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는 전자신고로만 가능하다.

GST Accounting Period	Without GIRO plan	With GIRO plan for GST payment	
	Filing and Payment Due Date	Filing Due Date	GIRO Deduction Date
Jan - Mar	30 Apr	30 Apr	15 May
Apr - Jun	31 Jul	31 Jul	15 Aug
Jul - Sept	31 Oct	31 Oct	15 Nov
Oct - Dec	31 Jan	31 Jan	15 Feb

라. 매입세액(Input tax) 공제

○ 사업자는 GST 과세대상 매출세액에서 사업상 매입에 대해 지불한 매입세액을 상계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동호회비, 자가소비, 차량임대료, 차량유지비, 의료비와 도박, 경마, 복권, 슬롯머신 등과 관련되 지출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비거주 사업자는 거주자인 세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ST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세무대리인은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GST를 환급신청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 내에서 차후에 공급되는 비거주자의 매출 GST에 대해 상세히 신고하여야 한다.

마. GST 사업자의 의무사항

○ GST 등록번호를 포함한 Tax Invoice 발행하여야 하고, 물품에 GST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여 하여야 한다. 최소 5년간 GST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 시에는 GST 신고 및 잔여재산($10,000 이상)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자발적으로 GST 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2년간 등록한 GST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과세공급을 창출하여야 한다.

5 기타세 (Other Taxes)

가. 재산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소유자(Owner)’인데, 이는 반드시 ‘법률상 소유자(Legal Owner)’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되는 경우 임대료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재산세법상 소유자로 간주된다.

○ 토지, 상가, 산업용 건물에 한해서는 일괄적으로 10%가 부과되며, 거주 부동산의 경우는 연간 임대했을 경우 추정되는 임대료인 연간가치(Annual Value; AV)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며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세율이 다르다.

<소유자가 주거하지 않는 부동산의 재산세율(2014～2015)>

(단위 : 싱가포르달러(S$), %)

연간가치(Annual Value)	2014	2015
~ 30,000	10	10
30,001 ~ 45,000	11	12
45,001 ~ 60,000	13	14
60,001 ~ 75,000	15	16
75,001 ~ 90,000	17	18
90,001 ~	19	20

<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율(2014～2015)>

(단위 : 싱가포르달러(S$), %)

연간가치(Annual Value)	2014	2015
~ 80,000	0	0
8,001 ~ 55,000	4	4
55,001 ~ 60,000	5	6
60,001 ~ 70,000	6	6
70,001 ~ 85,000	7	8
85,001 ~ 100,000	9	10
100,001 ~ 150,000	11	12
150,001 ~ 130,000	13	14
130,001 ~	15	16

○ 재산세 면제 대상

- 공공의 종교목적으로 이용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학교
- 기부 목적
- 싱가포르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

나. 인지세

○ 부동산·채권에 대한 임대차 및 매매, 신탁, 교환, 공유물 분할, 증여 또는 저당권설정 시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들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거래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문서가 작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거래가 도중에 중단되더라도 납부한 인지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 계약서에 서명한 후 국내의 경우 14일, 해외에서 서명한 경우 매입가 또는 시가 중 높은 금액에 대해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유산세(상속세) : 2008.2.15일 이후 상속세 폐지

라. 자동차세 (Road Tax, Vehicle License Fee)

○ 자동차 수량 제한 및 도로정체 예방을 위해 배기량과 사회적 형평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에 부과된다.

마. 도박세

○ 재무부에 의해 면세단체(exempt organization)로 지정되면, 판돈으로 수취한 금액이 도박세법(Betting and Sweepstake Duties Act)에 의한 도박세(Betting and Sweepstake Duties) 부과대상 금액이 된다. 예를 들면, 패리뮤츄얼(예 : TOTO, 경마), 스테이크경마(Sweepstakes)189), 기타 도박성 풋볼게임 및 스포츠 행사 등에 대해 도박세가 부과된다.

바. 민간복권세

○ 추첨 등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전이 배당되는 경우 복권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면, Fruit machines, Lucky Draws, Tombola and Bingo 같은 것이 있다. 민간복권(private lottery)은 게임이나 도박 등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설립된 클럽이나 단체 회원에 한해 티켓을 판매하는 복권이다.

사. 카지노세 : 2010년 3월부터 부과

○ 싱가포르에서 카지노는 Marina Bay와 Resorts World Sentosa의 2개의 복합휴양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세(Casino Tax)는 카지노의 총게임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6 세무조사와 불복제도

가. 세무조사

○ 세무조사는 과거에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여 납세의무자의 보다 나은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매년 선별하고 있다.

○ 세무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통지** - 서면, Email 또는 전화로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과 조사기간, 조사대상연도, 준비할 서류 등을 알려준다.

2) **면담** - 세무조사 대상자의 사업운영과 회계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면담을 시작한다.

3) **장부조사 -** 세무조사 대상자와의 면담 후 장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공무원은 원장, 일지, 원문서 등 회계장부와 은행 계좌, 사업관련 전산매체 등을 세금신고서와 대조한다.

4) **조사종결** - 회계장부의 보존 상태, 조사의 범위 등에 따라 조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조사는 12개월 안에 종결된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조정할 사항을 고지하고 부과처분을 한다.

5) **고지 -** 경정처분고지서(Notice of Additional/Amended Assessment)를 발부한다.

나. 조세범 처벌

1. 범칙조사

○ 범칙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고 관련기관이 조사에 승인한 경우에 진행된다.

- 예비조사(Preliminary Inquiries)는 일반적으로 신고서에 오류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소득의 누락 또는 과소신고를 인정한 경우에 착수된다.

○ 조사의 범위는 위반행위의 성격, 관련된 소득의 원천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후에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를 국세청에 소환하여 과거 및 현재 신고서에서 모든 위반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게 된다.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의 질문검사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질문(Specific Queries) : 자산, 주식 등의 취득원가 및 양도가격, 자금원천 등에 대한 특별질문을 제기
- 인터뷰 요청 : 인터뷰에서 범칙조사 개시의 원인이 된 정보를 공개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완전공개를 하도록 권유함
- 계좌 및 서면조사 :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에 대한 기록을 요청받게 되고, 그 밖에 은행 기록, 자금원천에 대한 증거, 생활비 지출내역 등도 요청받을 수 있음
- 조사원공무원의 방문 :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의 강한 혐의가 있고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짐

○ 납세의무자는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가 작성한 누락소득의 계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의 계산액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 및 가산세에 대한 재판외 합의(Out-of-court Settlement)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가산세는 위반행위의 정도, 범칙조사 동안 납세의무자의 협력수준 및 납세의무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 조세포탈사건은 자주 형사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재판외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소송에 의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조세형사범

1) 소득세법 규정 위반죄

○ 소득세법상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 유죄이다.

○ 위반행위를 명시한 규정에서 제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에 의하고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의한다.

2) 무신고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세법 상의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자는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에 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의한다.

3) 허위신고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부주의하게 세금신고서에 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5,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에 처한다.

4) 조세포탈죄

○ 조세포탈죄는 일반조세포탈(Tax Evasion)과 중조세포탈(Serious Fraudulent Tax Evasion)로 구분된다.

○ 일반조세포탈은 고의적으로 직접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거나 조세포탈을 위해 다른 자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는 자로서

- 세금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을 누락한 경우
- 세금신고서나 고지서에 잘못된 서술이나 입력을 한 경우
- 소득세법에 의한 질문이나 정보요청에 대해 잘못된 대답을 준 경우
- 형벌은 1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에 의한다. 만일 일반조세포탈을 3회 이상 하거나 1회의 일반조세포탈과 1회의 중조세포탈을 한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의한다.

○ 중조세포탈은 고의적으로 직접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거나 조세포탈을 위해 다른 자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는 자로서

- 허위의 장부나 기록을 준비·관리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위·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 사기나 조작에 의하거나 그러한 수법의 이용에 대해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성립
- 형벌은 5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에 의한다. 만일 중조세포탈을 2회 하거나 1회의 일반조세포탈과 1회의 중조세포탈을 한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의한다.

5) 공무수탁사인 등의 범죄

○ 소득세법의 집행을 위해 선임된 자나 소득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고용된 보조자가

- 권한이 부여된 부과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 개인 사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징수한 세액의 일부를 유보하는 경우
- 그가 징수하거나 받은 세액에 대한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누군가를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 또는 다른 개인과 함께 불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 1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에 의한다.

다. 불복

1. 이의신청

○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과처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납부할 세액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경정처분(Amended Assessment)을 하지만, 기각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경정거부통지서(Notice of Refusal to Amend)를 한다. 이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만 납세의무자는 심판위원회(Board of Review)에 심판청구(Appeal)를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인용 또는 철회될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확정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한 심판청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때에 부과처분이 확정된다. 한편, 각 세목별 최고책임자는 심판청구에서 결정된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확정된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확정된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할 수 있다.

- 부과처분에서 과세소득이 누락된 경우
- 잘못 공제된 경우
- 납세의무자의 실수에 의한 경우 그리고
-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의 실수에 의한 경우

2. 심판위원회 (Income Tax Board of Review)[13]

○ 이의신청의 결과에 재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정거부통지서(Notice of Refusal to Amend)를 수령한 이후에 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심판통지서(Notice of Appeal)를 경정거부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한 심판신청서(Petition of Appeal)를 심판통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심판위원회는 심판신청서(Petition of Appeal) 접수일로부터 6-8주 안에 사전심리회의(Pre-Trial Conference)를 개최하여 납세의무자와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 간의 쟁점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심판위원회가 열린다.

○ 심판결과 위원회는 심판대상이 된 부과를 확정, 감액경정, 증액경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심판결과는 위원들의 과반수 의사에 의하며 그 결과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될 수 있다.

○ 부과가 과도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심판대상이 된 부과처분이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가 한 추정에 근거한 사실이 있더라도 동일하다.

---

13) 심판위원회는 평가심판위원회(Valuation Review Board), 소득세심판위원회(Income TaxBoard of Review), GST심판위원회(Goods and Services Tax Board of Review)로 나뉜다.
(http：//app.mof.gov.sg/ notice_of_appeal_personal.aspx#property).

3. 고등법원 (High Court)[14]

○ 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상 의문이 없는 경우에 확정된다.

○ 법률상 쟁점이 있거나 법률과 사실관계가 혼합된 쟁점이 있는 경우로서 다툼이 있는 납세액이 2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나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 모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상소법원 (Court of Appeal)

○ 납세의무자와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라. 세법해석 사전답변

세법해석 사전답변(Advanced Ruling)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모든 납세의무자는 세법 규정이 본인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답변 결과는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1. 신청자격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의도하는 거래방식'(Proposed Arrangement)에 적용되는 특정 법조항에 대한 서면해석으로, 개인(1인 또는 2인 이상 Joint)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14) 싱가포르의 사법권은 헌법에 의거하여 최고법원(Supreme Court)과 부속법원(Subordinate Courts)에 귀속된다. 최고법원은 고등법원(High Court)과 상소법원(Court of Appeal)로 구성되는데, 상소법원은 고등법원의 상급심이다. 부속법원은 지역법원(District Courts),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Courts), 특별법원(Specialised Courts), The Small Claims Tribunals로 구성된다. 지역법원과 치안판사법원은 모두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법원에는 가족법원, 청소년법원 등 9개의 법원으로 구성된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신청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다만 세법에서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의무를 부여한 규정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제공할 수 없다.

- 가산세 부과 및 면제, 신고서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 고발, 징수
- 신청사건이 납부해야 할 세금, 국외법률의 해석 또는 이중과세방지 조약의 당사국이 처리해야 할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이 신청자 본인과 신청대상인 거래방식에 대해 적용되는 방법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이미 존재하고, 신청사건이 기존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효력이 미치는 YA에 적용되는 경우 등

2. 신청절차

○ 일반적인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기한은 의도하는 거래일로부터 2달 전까지, 신속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기한은 의도하는 거래일로부터 1달 전까지이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신청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환급되지 않는 신청수수료 562싱가포르달러(GST 포함)
- 시간당 추가수수료 140.50싱가포르달러(GST 포함)
- 신청사건에 우선권을 부여해 판단을 속행하는 경우 위 2개의 수수료 총액의 2배의 추가 수수료
-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외부전문가에 지급된 수수료

3.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효력

○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고 답변 내용에 기재된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는 답변 내용에 언급된 방식으로 법조항을 적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은 자도 신고서를 준비할 때 언급한 거래방식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적용해야만 한다. 만일 언급된 거래방식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변경사항은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제공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최종적인 판단이므로, 답변 내용에 대한 불복은 제기 할 수 없다.

○ 답변 내용에 명시된 거래방식과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이거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과 관련하여 중대한 생략 또는 오해가 있었던 경우, 답변 내용의 도출에 결정적인 미래 발생할 사건이나 다른 문제에 대한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의 가정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방식과 관련된 자에게 제공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WWW.NTS.GO.KR

V

싱가포르의 조세지원제도

1. 조세지원제도 개괄 ····· 88
2. 조세지원제도 주요내용 ····· 88

1 조세지원제도 개괄

○ 싱가포르는 전액 또는 일부 과세면제, 저율과세, 투자공제, 특별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에 대해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금융산업에 대해 많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 주사무소(headquarters)에서 벌어들인 적격한 소득에 대해서는 5% 또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국내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신설법인에 대해 5년에서 15년까지 과세면제를 허용하고 비거주자에게 적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수출업무에 해당되는 조세지원제도인 적격소득의 90% 과세면제가 적용된다.

○ 연구개발비용, 지적재산비용, 수출 및 시장개발 촉진비용, 해외투자개발 및 금융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2 조세지원제도 주요내용

가.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

○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partial tax exempt)는 2004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신설법인은 그들의 소득 중 상당부분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상적으로 산출된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의 최초 100,000 S$는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 200,000 S$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 과세면제되는 금액은 200,000S $가 된다.

○ 과세면제제도는 최초 3개 과세연도에 대해서 적용된다. 최초 적용 과세연도는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과세연도이다.

○ 신설법인이 과세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싱가포르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의 과세주체인 거주자이어야 함
- 관련 과세연도 기간에 총주주지분을 직·간접적으로 20명 이하의 주주가 보유하여야 함
- 관련 과세연도 기간에 모든 주주가 개인이어야 함

○ YA 2009부터 모든 주주가 개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관련 과세기간에 있어서 1인의 주주가 보통주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는 한 법인 주주가 있는 신설법인도 과세면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나. 생산성 및 혁신 지원제도

1) 개관

○ 생산성 및 혁신 지원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는 2010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공제대상 지출은 ① 연구개발 ② 지적재산권 등록(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plant 등 포함) ③ 지적재산권의 취득(예를 들면, 회사가 사업 목적상 특허권 및 저작권의 구입) ④ 자동화 ⑤ 종업원 훈련 ⑥ 디자인에의 투자 등이다.

○ 모든 법인은 회계기간 2010년에서 2017년(YA 2011 ~ 2018)까지 6가지 분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의 400%를 공제할 수 있다. YA 2011과 YA 2012의 경우, 6가지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 종합 공제한도가 600,000 싱가포르달러이고 YA 2013 ~ 2015의 기간에는 분야별

연간 공제한도가 300,000 싱가포르달러이다. 따라서, 2011년과 2012년에는 각 활동별로 2년간 총 600,000 싱가포르달러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2013~2015년 기간 동안 6개의 각 분야에 대해 매년 300,000 싱가포르달러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 YA 2015 ~ 2018의 기간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각 분야의 지출에서 최대 600,000 싱가포르달러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기업과 중기업이란, 연매출액이 SGD 100million불이 초과하지 않거나 종업원이 2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 PIC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증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대상활동	적격 지출 범위	적격지출 사례
연구개발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적격한 R&D활동을 위한 직원 및 소모품 비용	신제품개발을 위한 싱가포르에서의 연구인력 급여와 연구기관 수수료
지적재산권 등록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설비(plant) 등의 등록에 발생한 비용	상표권 등록을 위해 IPOS[15]에 납부한 수수료
지적재산권 취득	사업에 사용될 지적재산권 취득에 발생한 비용	제조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특허된 기술 구입비용, 해외상표권 구입비용
자동화	자동화설비 취득에 발생한 비용	팩스, 레이저프린터, 컴퓨터 등 IT설비 비용
종업원 훈련	종업원을 위한 외부훈련 및 WDA[16]가 승인한 사내훈련에 발생한 비용	직원을 위한 외부교육비용
디자인	신제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에 발생한 비용	신제품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비용

15)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16)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2) 적용기한

○ 생산성 및 혁신 지원제도는 YA 2011부터 YA 2015까지 5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YA 2018까지 적용된다. 지출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즉, 신고연도 이전 연도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한다.

○ 예를 들면, 회계연도가 9월 30일에 종료하는 경우, 2015신고연도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의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별첨 6] 주요 조세지원제도 신고서식 - PIC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Application for Approval of Equipment
(From Year of Assessment 2013)

1. Please complete this form if you are applying for approval of equipment for PIC from Year of Assessment 2013.
2. This form may take you 15 minutes to complete. Please read the IRAS website on "Applying for Approval of IT and Automation Equipment" at www.iras.gov.sg > *Home* > *Schemes* > *Businesses* >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 > *Applying for Approval of IT and Automation Equipment*.
3. You need to complete this form if your equipment does not fall under the PIC IT and Automation Equipment List* and you wish to have your equipment approved for PIC.
   * The PIC IT and Automation Equipment List is available at www.iras.gov.sg > *Home* > *Schemes* > *Businesses* >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
4. If you are applying for more than 1 such equipment, please use a separate form for each equipment.
5. IRAS will process the application within three weeks. Please submit your application early to allow IRAS to process it in time for you to apply for PIC Cash Payout or to claim PIC deductions/allowances in your annual income tax return.
6. The claim for PIC should **not** be made in your tax return or cash payout application form until approval has been granted.
7. Please submit the completed form to IRAS at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Part A - Taxpayer Particulars

1. For all businesses (including sole-proprietorships):
   Name of business : _____
   Tax reference no. of business : _____
2. For Sole-proprietors only:
   Name of Sole-proprietor :
   Tax reference no. of Sole-proprietor : _____

Part B - Details

1. Year of Assessment of claim :
2. Accounting Period : (dd/mm/yyyy) (dd/mm/yyyy
3. Principal Business Activity : _____

B1. Details of automation equipment (Please attach a separate sheet if you need more space.)

1. Detailed description of the equipment (e.g. name, model, function & specification) and to provide photographs where applicable.

2. Date of purchase/lease period (dd/mm/yyyy), (if applicable)	
3. Cost of equipment	$

Please mark 'X' in the appropriate box

4a. Is the equipment a basic tool used in the business? (E.g. washing machine and dryer are basic tools used in the laundry — Yes ☐ No ☐

If you have indicated "Yes" in 4a above, please complete 4b:

4b. Has the equipment been used in the business before? Yes ☐ No ☐

If you have indicated "Yes" in 4b above, please complete 4c:

4c. Does the equipment increase productivity as compared to existing equipment used in the business? Yes ☐ No ☐

Please mark 'X' in the appropriate box

5a. Does the equipment automate/ mechanise the current work processes(es) of your business? Yes ☐ No ☐

Example: Currently, in a rubber manufacturing business, an operator trims the rubber manually with a rotating grinder. With the new machine, the process is automated, as the machine replaces the operator and performs high-speed rubber trimming based on pre-configured settings.

If you have indicated "Yes" in 5a above, please complete 5b and 5c:

5b. Please describe the current work process(es) before using the equipment.

국세청
WWW.NTS.GO.KR

Ⅵ

싱가포르의 국제조세

1. 국제조세 개괄 ····· 95
2. 이중과세방지 규정 ····· 102
3. 이전가격세제 ····· 105
4. 최근 국제조세 동향 ····· 112
부록.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주요 규정 ····· 113
참고문헌 ····· 133

<싱가포르 이전가격지침 개정사항('15.01.15.)>

□ **싱가포르 과세관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 IRAS)는 2015.01.06.일 개정된 이전가격지침(Revise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News IBFD)을 공개함**

○ 이 지침은 2006년 2월의 첫 번째 지침과 이에 따른 부가지침 등을 통합한 두 번째 지침(The 2nd edition)으로 새로운 구체적인 개념과 절차 등을 도입함

- 이는 OECD 이전가격지침(2010)과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한 것임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면서 3단계 접근방법을 권고함**

○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 가장 적합한 이전가격모형과 대상 당사자의 식별,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순으로 권고하고 있음

□ **거래와 동시에(contemporaneous)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함**

○ '동시에' 문서화하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이루어진 시기에 이전가격 관련 증빙과 정보가 문서화 되어야 함

- 다만 납세협력의 부담 감소를 위해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용인함

○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납세협력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가 요구되지 않는 기준금액(threshold)에 미달하는 거래를 규정함**

○ 특수관계자간 재화의 매입 및 공급, 자금의 차입 및 대출, 기타 거래로 구분하여 문서화가 요구

※ 문서화가 요구되지 않는 금액기준

(단위 : 백만SGD)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유형	연간 금액기준
재화의 매입	15
재화의 공급	
대출	
차입	
기타 거래(용역손익, 로열티, 임대차손익)*	분류별 1

* 금액범위를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은 각 분류별 합계액으로 판단됨.

자료 :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Transfer Pricing Guidelines(Second edition), IRAS e-Tax Guide, 06 Jan 2015, pp. 35~36.

1 국제조세 개괄

가. 싱가포르의 국제조세 체계

1.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 조세조약은 상대국과의 이중과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두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며 국제거래에서 조세권한을 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이러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우선한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과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국제조세의 구성

○ 싱가포르는 국제조세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두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함.

○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다.

○ 소득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세액공제제도는 소득세법에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조세 분야의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 소득세가 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s)에서 밝히고 있다.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와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는 운영되지 않는다.

나. 비거주자 ㅡ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개요

○ 비거주자는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면세대상이 아닌 이상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가 받은 국외원천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15% 또는 거주자의 누진세율 중 세액의 합계가 높은 쪽으로 과세된다. 이사의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등 근로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거나 면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17]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 간주국내원천소득

○ 싱가포르 소득세법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싱가포르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운영에서 발생된 수익
- 사람과 물건을 싱가포르에서 외국으로 이동시키는 선박과 항공기의 비거주자 운영인의 수익
- 해당 수익이 싱가포르에서 메시지의 전송에서 발생된 경우 케이블 또는 무선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수익
- 국내에서 근무한 경우 발생한 소득(국내 수취여부 불문)
- 정부를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
- 이자 관련 수입
- 로열티, 노하우, 기술서비스료, 사업관리료, 동산의 임대소득

17) 2016.01.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YA 2017) 부터는 22%)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일반

○ 국내원천소득은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거나 면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의 단일세율(Flat Rate)이 적용된다. 그러나 싱가포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자인 싱가포르시민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20%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였다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부담하도록 공제를 허용한다.

4.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1) 60일 이하 근무한 경우

60일 이하의 단기근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면제된다. 다만, 회사의 이사,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61일 이상 182일 이하 근무한 경우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5%를 적용한 금액과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에 의해 계산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 각종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1) 국내영위사업

○ 국내에서 사업하는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은 국내원천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국내사업 유무에 대한 판단은 형식보다는 활동(Activity)에 의존한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
- 다른 방식으로 개입된 자본유무(자기주식 보유, 특허권 등 재산보유)

-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지 유무(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 계약이 체결된 지역
- 서비스가 수행된 지역
- 재산권이 이전된 지역

2) 고정사업장

○ 고정사업장의 존재는 조세조약의 목적 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싱가포르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존재보다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은 소득의 원천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 고정사업장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관리장소, 지점, 사무실, 공장, 작업장, 천연자원의 채굴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이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비거주자도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신축장소 또는 건설현장, 회의실을 갖고 있거나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최소 몇 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신축장소 또는 건설작업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
- 국내에 고용인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 용역(자문용역 포함)이 제공되는 장소
-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하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국내에서 상시 활동하는 경우

○ 싱가포르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의 정의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보다 싱가포르 세법은 고정사업장을 더욱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 규정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6.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 일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규정이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세율에 의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날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2)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방식

○ 10%의 분리과세세율은 로열티, 동산 사용 및 사용권에 대한 일시금 및 노하우 이용료에 적용된다.

○ 15%의 분리과세세율은 이자소득 및 동산 사용을 위한 임대료에 적용된다.

○ 위의 10% 또는 15%의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되려면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Effectively) 연관되어 발생되는 소득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중개인인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 기술적 보조 및 서비스료, 사업관리 및 관리보조료,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20% 원천징수세율(외국법인 17%)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율 - YA 2016까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종류	과세방식
이자소득	15% 원천징수분리과세
로열티, 동산 사용 및 사용권에 대한 일시급	10% 원천징수분리과세
노하우이용료	10% 원천징수분리과세
이사의 보수(Remuneration)	신고납부분리과세 (예납적원천징수세율 20%)
자산 임대 수익	신고납부분리과세 (예납적원천징수세율 20%)
non-citizen SRS[18] 회원에 의한 반환금	신고납부분리과세 (예납적원천징수세율 20%)
전문직 소득	15% 분리과세와 비거주자 20% 원천징수 중 선택
연예인의 수익	10% 원천징수분리과세

○ YA 2017년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된다. 이는 거주자의 소득세율과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원천징수세율 - YA 2017부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종류	과세방식
이자소득	15% 원천징수분리과세
로열티, 동산 사용 및 사용권에 대한 일시급	10% 원천징수분리과세
노하우이용료	10% 원천징수분리과세
이사의 보수(Remuneration)	신고납부분리과세 (예납적원천징수세율 22%)
자산 임대 수익	신고납부분리과세 (예납적원천징수세율 22%)
non-citizen SRS 회원에 의한 반환금	신고납부분리과세 (예납적원천징수세율 22%)
전문직 소득	15% 분리과세와 비거주자 22% 원천징수 중 선택
연예인의 수익	10% 원천징수분리과세

18) SRS :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

3) 지급간주소득

어떠한 유보금을 재투자, 축적, 자본화를 수반하는 경우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로열티를 받아야 할 비거주자가 로열티 지급인에게 주식투자를 지시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실제 지급금을 수령했는지에 상관없이 로열티는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지급간주시점은 다음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 계약상 지급일
- 비거주자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금이 수령인(비거주자)의 계좌에서 차감된 때
- 실제 지급일

4) 원천징수 유예

중대한 해외그룹(Substantial Overseas Group)의 일원인 국외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자소득 및 로열티, 노하우, 기술서비스료, 사업관리료, 동산의 임대소득과 관련된 간주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한번 유예되면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무한정적으로 적용된다.

※ 중대한 그룹 : 연결기준(Consolidated Basis)으로 최소한 연 5천만 미 달러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한 해외그룹의 일원이 아닌 국외회사의 국내지점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중과세방지 규정

가. 개요

○ 싱가포르는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송금주의를 가미해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싱가포르에서 수취된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수취된 소득이라도 특정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과세 면제한다.

○ 싱가포르에서의 이중과세방지는 내국세법에 의한 것과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세법에 의한 것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과세면제방식과 특정 외국세액에 대한 일방적인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 조세조약에 의한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면제, 저율과세 방식에 의한 감면도 일부 소득 또는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나. 내국세법에 의한 이중과세 방지

1. 과세면제

1) 거주자에 대한 과세면제

○ 싱가포르 거주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모든 국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과세면제하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 면제된다.

○ 이러한 과세면제 규정은 만일 거주자가 싱가포르에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국외소득을 수취한 경우라면 적용할 수 없다. 파트너십을 통해 수취한 국외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면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 면제될 수 있다.

2) 배당, 지점 이익 및 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배당, 지점 이익, 용역소득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면제한다.

○ 싱가포르에서 2003년 6월 1일 이후에 국외 배당소득, 국외 지점이익, 국외원천 용역소득을 수취하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 과세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당해연도에 특정 국외소득을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외국에서의 최고 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 해당 국외소득이 다른 나라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다.
-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납세자에게 과세면제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과세대상인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 국외 지점에 대한 과세면제는 싱가포르 회사가 외국에 있는 국외 지점을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용역소득이 과세면제 되려면, 외국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업(trade, business or profession)을 수행하는 자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일반적인 과세면제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거주자는 국외소득의 전체 또는 부분적 과세면제를 재무부 장관(Minister for Finance)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국으로의 송금이 싱가포르의 경제 및 기술 개발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우 재무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국외소득에 전체 또는 부분적 과세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2. 세액공제방식

○ 조세조약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 납부세액을 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당해 신고 및 부과연도에 싱가포르 거주자만이 조세조약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세액공제 신청자는 국외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외국세액을 부담했어야 하고 그 국외소득은 외국세액에 대한 소득공제 전 과세대상 총소득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 외국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국외소득에 대한 싱가포르 세액 또는 외국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싱가포르의 유효세율(SETR :

Singapore Effective Tax Rate)이 외국의 세율과 같거나 더 낮은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싱가포르의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대로 싱가포르의 유효세율이 외국의 세율보다 높으면, 세액공제금액은 외국의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비법인 납세자의 유효세율 = 세액공제 등 차감 전 싱가포르 납부세액 / 과세소득
- 법인 납세자의 유효세율 = 세액공제 등 차감 전 싱가포르 납부세액 / 과세표준

○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세액공제의 산출은 원천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정국가로부터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과 싱가포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 여기에서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이 외국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국외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는 상계할 수 없다.

○ 국외소득이 싱가포르에서 과세된 이후 2년이 경과한 후의 외국세액공제는 신청할 수 없다.

3 이전가격세제

가.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저세율 국가에 해당되어 이전가격세제는 국세청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나, 1990년대 초에 이전가격에 관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싱가포르 역시 낮은 세율과 광범위한 조세지원 및 조세감면으로 인해 이러한 논쟁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 199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은 과세당국들이 일반적인 또는 특수한 이전가격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외국의 과세당국은 지속적으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회사와 이전과세세제가 잘 정비된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시해 왔다.

○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싱가포르 국세청은 2006년 2월 23일 첫 번째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적용지침'으로 정상거래가격원칙의 채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는 미흡하였다.

○ 싱가포르 국세청이 2006년 2월 23일 발표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s)'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을 상당부분 따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다.

○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OECD 회원국이 아니므로 OECD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에 더 잘 맞는 이전격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2015년 1월, 싱가포르 국세청은 200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약 9년 만에 두 번째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적용 지침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BEPS 관련 내용을 수용하였다.

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1. 적용범위

○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재화, 용역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 법적실체와 고정사업장과 같은 과세대상 실체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고 거래당사자 양자가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경우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특수관계자의 개념

○ 하나의 실체와의 관계에서 '특수관계'란 직·간접적으로 다른 실체를 통제하는 또는 통제당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 특수관계자의 개념은 통제의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에 관한 추가적인 정의는 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은 소유권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거래에 참여한 증거가 있는 경우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정상거래가격원칙의 적용

1) 정상거래가격원칙

○ 싱가포르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국세청은 OECD 모델조약의 Art.(1)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상거래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납세자는 정상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가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검토가 수행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정상거래가격원칙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친 업무처리를 권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거래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다음으로 적절한 이전가격 방법과 거래당사자를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정상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이전가격 결정방법

○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 거래접근법(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과 거래적 이익접근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 거래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방법(cost-plus method)이 있다. 거래적 이익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과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 있다.

○ 국세청이 이 중에서 더 선호하는 방법은 없고 각 방법 간에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들은 열거되어 있는 5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상거래가격을 결정하면 된다. 제시된 방법의 변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신의 이전가격이 제3자 거래원칙에 의한 것임을 보이기 위한 충분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OECD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납세자가 최소한의 조정과 데이터의 가용성 및 우수성을 기반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상거래가격의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3) 정상거래가격의 범위

○ 국세청은 이전가격이 약간의 주관성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정상거래가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가격이나 이익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정상거래가격을 허용하고 있다.

4. 문서의 작성과 보관

1) 문서화의 목적

○ 문서화를 하는 목적은 납세자가 정상거래가격원칙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문서화에 관한 항목들을 4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 4가지 범주는 그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싱가포르에서 각 특수관계자에 관한 정보, 싱가포르 기업과 모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 및 이전가격 분석이다.

○ 싱가포르는 불충분한 문서 및 문서 미비에 대하여 벌금(penalty)을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적절한 문서를 제시함으로써 정상거래원칙을 따랐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

○ 이전가격 관련 문서는 납세자의 세금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하는 것이다.

2) 문서화의 범위

○ 정상거래가격으로 거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납세자의 판단에 맡겨둔 상태이므로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의 실질과 복잡성, 비용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을 판단하여 문서화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문서 보관기간

○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의 보관 기간을 소득세법에 의한 법정 장부 보관의무기간과 일치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실무상 장부보관기간은 5년 이상이다.

다. 상호합의와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1. 상호합의

○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와 소득세 조약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이중과세로부터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해당 조약의 상호합의(MAP : Mutual Agreement Procedure)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절차는 OECD 모델조약의 Art. 2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전가격 조정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 상호합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의해 개시되지만 협상은 각 정부 간에 이루어지고 납세자는 각 과세관청 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상호합의는 합의를 도출하고 논쟁을 해결하도록 과세관청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은 오로지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있고 납세자 역시 과세관청이 결정한 결과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납세자는 신청을 취소하거나 절차를 중단하거나 또는 결과를 거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이중과세로부터 감면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이전가격사전합의

○ 이전가격사전합의(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과세처리에 관하여 납세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전가격사전합의는 납세자의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거래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전가격사전합의를 하기 위한 싱가포르 과세관청의 권한은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는 사전적으로 이전가격을 합의할 의도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의 계류중인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종종 사용된다. 따라서 이전가격사전합의는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전가격 논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3. 상호합의와 이전가격사전합의의 적용절차

○ 상호합의는 국제적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 이전가격 조정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인 경우에 가능하다. 거주자인 납세자는 상호합의의 개시를 국세청에 고지하여야 한다.

○ 이전가격사전합의도 국제적인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일방적인 또는 상호적인 이전가격사전합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이전가격사전합의가 신청되면 국세청은 이전가격사전합의의 목적이 이중과세회피에 있는지, 구체적인 당기 및 미래의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일방적인 또는 상호적인 사전합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외국 과세당국이 그 신청에 참여하는지를 고려한다.

○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사전합의가 국세청에서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세청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또한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사전합의 협상 모두 납세자는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거래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적절한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과거에는 상호합의와 이전가격사전합의에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절차도 전적으로 국세청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는 상호합의와 이전가격사전합의를 신청하기 위해 납세자가 따라야 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 국세청은 이전가격 문제에 있어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합의와 사전합의에 있어서 시기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 상호합의와 이전가격사전합의는 싱가포르와 포괄적인 소득세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만일 비거주자인 특수관계회사가 조세조약 비체결 국가에 위치해 있다면, 거주자인 납세자는 일방적인 이전가격사전합의만 신청할 수 있다. 즉, 거주자인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합의만을 의미하게 된다.

4 최근 국제조세 동향

○ 2013년 4월, 싱가포르는 미국과 FATCA 협약 체결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세목적의 정보교환[EOI Standard(Standard for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에 배서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 EOI Standard에 서명한 회원국이 싱가포르 국세청에 과세를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싱가포르 국세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013.07.01.일 싱가포르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심각한 조세포탈 범죄로 분류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조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록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주요 규정

PART II - TRANSFER PRICING ADMINISTRATION

7 IRAS' transfer pricing consultation programme

Introduction

7.1 This section explains the Transfer Pricing Consultation ("TPC") programme. Through this process, IRAS reviews and audits the transfer pricing methods and documentation of selected taxpayers.

Objectives of TPC

7.2 The objectives of TPC are to ensure taxpayers comply with th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nd identify areas in which IRAS can advise taxpayers on good practices in transfer pricing.

7.3 IRAS engages the taxpayers to review :

(a) The adequacy and timeliness of the taxpayers' TP documentation;

(b)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xpayers' transfer pricing methods; and

(c) The arm's length outcome of the taxpayers' transfer pricing studies.

Selection of taxpayers for TPC

7.4 IRAS selects taxpayers for TPC based on risk indicators such as :

(a) The valu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b) The performance of the business over time; and

(c) The likelihood that taxable profits may have been understated by inappropriate transfer pricing.

7.5 Examples of circumstances in which transfer pricing risks may be considered high are :

(a) Transactions with cross-border related parties that are of large value relative to the other transactions of the taxpayer;

(b)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subject to a more favourable tax treatment;

(c) Recurring losses or large swings in operating results which may be unusual given the functions and assets of the taxpayer and the risks it assumed;

(d) Operating results that are not in line with businesses in comparable circumstances;

(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prietary knowledge or other intangibles in the business;

(f) Transactions involving R&D or marketing activities which could lead to development or enhancement of intangibles; and

(g) Indications (examples, through engagement with tax authorities, country's audit focus, etc.) that the transactions are likely to be subject to transfer pricing audit by tax authorities.

7.6 If necessary, IRAS may send questionnaires or information requests to obtain more data or information from taxpayers for risk assessment purposes.

Description of TPC process

7.7 The consultation with a selected taxpayer starts with IRAS arranging for a first meeting at the taxpayer's premises, and requesting for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that would be discussed at the meeting.

7.8 During the first meeting, the taxpayer's representatives present an overview of the taxpayer's business model and explain the transaction flows, the methods of pric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he relevant supporting documentation. IRAS will interview key personnel and review the TP documentation. IRAS will need to understand the business operations and transfer pricing, specifically :

(a) The business model and strategies;

(b) The conditions affecting the industry;

(c) The transaction flows among the related parties;

(d) The key activities each related party undertakes and the risks borne;

(e) The assets each related party owns or uses;

(f) The pricing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g) The process and documentation in place to check that the transfer prices are at arm's length.

7.9 After the first meeting, IRAS will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or documents concerning particular issues and may arrange for subsequent meetings with the

taxpayer.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IRAS will assess the adequacy of the taxpayer's TP documentation and identify transfer pricing issues for discussion with the taxpayer.

7.10 In some cases, IRAS may propose a tax adjustment under Section 34D of the ITA if the taxpayer's taxable profit is understated due to non-arm's length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taxpayer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respond to IRAS' proposal and discuss how to resolve the issue, before IRAS makes the tax adjustment.

7.11 At the conclusion of the TPC, IRAS will send a closing letter to the taxpayer with comment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xpayer's transfer pricing method and the adequacy of the taxpayer's TP documentation. IRAS may also make recommendations as to how the taxpayer can improve its TP documentation or its transfer pricing method.

7.12 The TPC process is illustrated in this flowchar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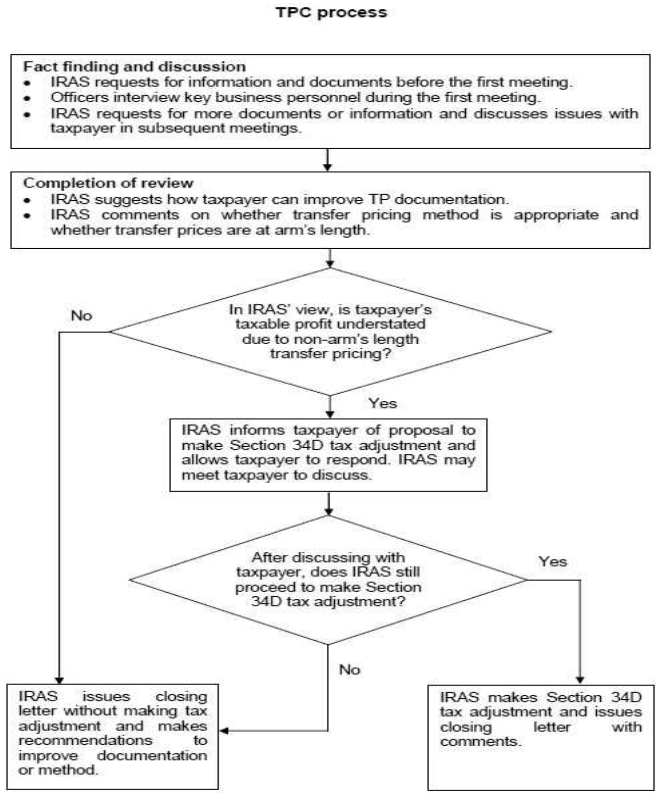

8 Avoiding and resolving transfer pricing disputes

Introduction

8.1 Where two or more tax authorities take different positions in determining arm's length prices, double taxation may occur. Double taxation means that the same income is included in the tax base for the imposition of taxation by two or more tax authorities.

8.2 When a Singapore tax resident taxpayer suffers double taxation from adjustments made by IRAS or a foreign tax authority to the transfer prices of its related party transactions, it can choose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

(a) Taking legal remedies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are made; and/ or

(b) Requesting IRAS to resolve the double taxation through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8.3 The taxpayer may also choose to avoid transfer pricing disputes by applying for an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for its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future years.

8.4 This section explains MAP and APAs in greater details and sets out the benefits, expectations and compliance rules. Sections 9 and 10 provide guidance on the processes for MAP and APAs.

At a glance – Dispute resolution through IRAS

8.5 The characteristics of MAP and APAs are summarised in the following table :

Characteristics	MAP	APAs	
		Bilateral/ Multilateral	Unilateral
Types			
• Unilateral agreement between IRAS & taxpayer			✓
• Bilateral agreement between IRAS & a foreign competent authority	✓	✓	
• Multilateral agreement between IRAS & two or more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	✓	
Objective			
• Eliminate double taxation	✓		
• Prevent double taxation		✓	✓*
• Provide tax certainty	✓	✓	✓*
* Lower level of assurance			

Characteristics	MAP	APAs	
		Bilateral/ Multilateral	Unilateral
Legal basis • Singapore tax treaties • Domestic tax law	✓	✓	✓
Availability • Singapore tax resident taxpayers • Non Singapore tax resident taxpayers	✓	✓	✓ ✓
Financial year ("FY") • Past FYs • Future FYs	✓	✓ ✓	✓
Filing fee • Free of charge • Fee imposed (only where Singapore does not have a tax treaty with the foreign jurisdiction)	✓	✓	✓ ✓

What is MAP?

8.6 MAP is a dispute resolution facility provided under the MAP Article in the Singapore's tax treaties9. It is a facility through which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y resolve disput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8.7 It provides an amicable way for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y to agree on the transfer pricing for their taxpayers'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past FYs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arising from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Where the agreed MAP outcome between the IRAS and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y is accepted by the relevant taxpayers, it is binding on the three parties.

What is an APA?

8.8 An APA is a dispute prevention facility provided under the MAP Article in the Singapore's tax treaties and domestic tax law. It is an arrangement between IRAS and the taxpayer or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y to agree in advance a set of criteria to ascertain the transfer pricing of their taxpayers'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a specific period of time. It provides taxpayers with certainty on their transfer pricing to avoid double taxation.

8.9 There are 3 types of APAs : unilater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As.

Unilateral APA

8.10 This is an agreement between IRAS and a taxpayer. It is suitable fo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a) Where the transfer pricing issue does not require the involvement of the foreign competent authority. For example, taxpayer seeks clarification on the domestic tax treatment in Singapore.

(b) Where the other related party to the transaction is resident in a jurisdiction with which Singapore does not have a tax treaty.

(c) Where the Singapore's tax treaty partner has no APA programme or has prescribed a minimum transaction threshold for an APA application to which the taxpayer's transaction falls short.

8.11 A unilateral APA offers a lower level of assurance against double taxation on the same income tha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PA. This is because the APA terms are non-binding on the foreign competent authority which is not a party to the unilateral APA process.

8.12 Taxpayers may suffer double taxation if the foreign competent authority disagrees with the agreement between IRAS and the taxpayer and makes adjustments to the transfer prices. The taxpayer will then have to rely on other remedies to resolve the double taxation.

8.13 We therefore encourage taxpayers to consider preventive measures such as applying for a bilateral APA, or if this is not possible, to also secure a unilateral APA with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y.

Bilateral APA

8.14 This is an agreement between IRAS and one of its tax treaty partners. Where the agreed APA outcome between the IRAS and foreign competent authority is accepted by the relevant taxpayers, it is binding on the three parties.

Multilateral APA

8.15 It is an agreement between IRAS and two or more of its tax treaty partners. Where the agreed APA outcome between the IRAS and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is accepted by the relevant taxpayers, it is binding on all the relevant parties.

What is the period for an APA?

8.16 IRAS will generally accept an APA request to cover three to five future FYs (i.e. covered period). However, the duration of the covered period should be based on taxpayers' assessment that there will not be any significant changes during the covered period that may affect the validity of the APA.

8.17 IRAS may consider taxpayers' request to extend the APA to prior years (i.e. roll-back years) based on the merits of the request when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a) The request is for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PA. IRAS will not accept the request if it is for a unilateral APA; and

(b)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for the covered period and for the roll-back years. Relevant documents should be maintained to substantiate this.

8.18 If IRAS accepts taxpayers' request to extend the APA to the prior years, the number of roll-back years will generally not exceed two FYs immediately prior to the covered period.

8.19 As a rule, IRAS does not regard an FY as a roll-back year if that FY has not ended at the time when the APA application is filed.

Example :

Company A and company B filed their APA application on 15 August 2014.

	Company A	Company B
FY ended	30 Jun	31 Oct
Period applied	1 Jul 2013 to 30 Jun 2018	1 Nov 2013 to 31 Oct 2018
Roll-back year	FY ended 30 June 2014 will be a roll-back year as the FY has ende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filed.	No roll-back year. FY ended 31 Oct 2014 will not be a roll-back year as the FY has not ende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filed.

If Company A's application is a unilateral APA, the FY ended 30 June 2014, being a roll-back year, will be excluded from the APA.

If Company A's application is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PA, the FY ended 30 June 2014 will be a roll-back year while 1 July 2014 to 30 June 2018 will be the covered period.

To avoid a situation where certain FYs are excluded from the APA, taxpayers are advised to observe the filing timeline for the APA process under section 10.

Who can apply for MAP or APA?

8.20 MAP, bilateral APAs and multilateral APAs are available to :

(a) Taxpayers that are Singapore tax residents; and

(b) Taxpayers who are not Singapore tax residents but have a branch in Singapore. However, such applications are to be made by the taxpayers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are tax residents and with which Singapore has a tax treaty.

Example :

A foreign parent company can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it is a tax resident for a MAP or APA for its branch operating in Singapore. The branch has to alert IRAS of the application.

In the case of an overseas branch which parent company is a Singapore tax resident, then that Singapore parent company can apply to IRAS for a MAP or APA concerning its overseas branch's transfer pricing affairs in a tax treaty jurisdiction.

8.21 Unilateral APAs are available to taxpay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Singapore tax residents.

When to apply for MAP and/ or APAs?

8.22 Taxpayers should only initiate MAP when double taxation has occurred or is almost certain. Double taxation should not be just a possibility, such as the mere occurrence of audit or examinations.

8.23 MAP should be initiated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e.g. three years) in the MAP Article of the relevant tax treaty.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the competent authorities rejecting the MAP request.

8.24 Taxpayers should only apply for APA when :

(a) There is a genuine motive to obtain certaint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b) The request relates to specific current or future transactions that are not hypothetical; and

(c) They are certain that the cross-border related party transactions will commence or continue to take place throughout the APA covered period.

How to apply for MAP and/ or APAs?

8.25 If taxpayers intend to apply for MAP or APAs, they should observe the filing process provided in sections 9 and 10 for MAP and APAs respectively.

8.26 Taxpayers' applications for MAP or APAs are subject to acceptance by IRAS and/ or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If an application is rejected, the taxpayer may seek alternative remedies under the relevant domestic tax law.

8.27 If taxpayers have applied for MAP to resolve double taxation, to avoid recurrence of similar transfer pricing disputes, taxpayers may choose to concurrently apply for an APA to cover the same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the future FYs.

What are the benefits of seeking MAP and/ or APAs?

8.28 The benefits of seeking MAP and/ or APAs include :

(a) MAP and APAs may provide an efficient and effective way to resolve transfer pricing issues through inter-government negot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axpayers and competent authorities;

(b) APAs provide certainty through prescribed guidance on the determination of acceptable transfer prices between related parties;

(c) MAP relieves double taxation occurring in the audited FYs when an agreement on the appropriate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is reached between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y;

(d)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As eliminate double taxation risks when taxpayers comply with the APA terms and conditions agreed between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and

(e) APAs avoid lengthy transfer pricing audits and penalty payments.

Understanding expectations and obligations

8.29 The acceptance of a MAP or APA application is at the discre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Where IRAS or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y rejects the MAP or APA application, the taxpayers will have to consider other options to manage their transfer pricing risks.

8.30 Upon accepting the MAP or APA application, IRAS will engage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if applicable) to conclude the MAP or APA. IRAS will apply its best efforts to bring every case to closure in a prompt,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While IRAS endeavours to achieve timely resolution of MAP or APA, the complexity of issues involved in each case will determine the actual time needed to resolve the case.

8.31 The MAP and APA negotiation is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so, taxpayers do not participate in or attend as observers at the negotiations unless they are called upon to make any clarification.

8.32 The success of the MAP and APA process depends on the cooperation from taxpayers. Taxpayers should therefore :

(a) Act in good faith throughout the process;

(b) Comply with all the requirements pertaining to pre-filing meetings and application processes;

(c) Provide access to TP documentation (refer to section 6);

(d) Be forthcoming in providing complete and reliable information and good quality analysis relating to the MAP and APA applications;

(e) Adhere to all the stipulated timelines when providing any clarification, information and analysis that may be requested by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f) Update IRAS on all information that they have provided to or received from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on a timely basis; and

(g) Provide the same set of information to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8.33 The lack of taxpayers' cooperation may result in :

(a) Their applications being rejected;

(b) The MAP and APA processes being discontinued; or

(c) No consensus being reached between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In such instances, taxpayers will have to rely on other remedies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8.34 The success of the MAP and APA process also depends on the agreement between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Taxpayers should not assume that IRAS would always be able to reach agreement for all MAP and APA cases. There may be valid constraints such as :

(a) The lack of cooperation from taxpayers as mentioned above;

(b) The transfer pricing adjustment cannot be varied due to domestic tax law or the adjustment has already been finalised through the domestic tax appeal process or litigation; and

(c) The lack of suitable data to analyse the transactions for future years.

8.35 Taxpayers must understand that the MAP and APA process can be time-consuming and resource intensive. Therefore, taxpayers should evaluate their own situations and apply for MAP and/ or APAs only if :

(a) The incidence of double taxation is certain or highly probable for the FYs to be covered by MAP and APA (see paragraphs 8.22 to 8.24);

(b) They have a robust basis and TP documentation to justify their transfer pricing methodologies;

(c) They have the necessary resources to support the MAP and APA process as mentioned in paragraph 8.32; and

(d) They have evaluated the suitability of MAP and/ or APAs by conducting an in-depth cost-benefit analysis for their tax situations.

8.36 Both MAP and APAs do not deprive taxpayers of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ir respective domestic tax law. Taxpayers should inform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if the matter is adjudicated through

any legal or judicial proceedings while the MAP and APA process is still on-going. The competent authorities will discuss and decide if the MAP and APA process should cease or be suspended.

8.37 Taxpayers are not obliged to accept the outcome agre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y may withdraw the application, terminate the process or reject the agreed outcome. However, as the MAP and APA process may demand substantial investment in time and resources from the taxpayers and competent authorities, taxpayers should not terminate the process unless there are valid reasons for doing so.

Discontinuation of MAP and APAs

8.38 The lack of cooperation during any part of the MAP and APA process may result in IRAS discontinuing the MAP and/ or APA.

8.39 The table below lists some examples where IRAS may discontinue the MAP and/ or APA：

S/No.	Examples	When IRAS will discontinue the MAP or APA
1	Non-submission of MAP or APA application IRAS and the taxpayer agreed at the pre-filing meetings that the taxpayer is to submit the application by the specified date. If the taxpayer fails to submit the application by the specified date, IRAS will consider that the taxpayer is no longer interested in pursuing the application.	When IRAS does not receive any information from the taxpayer regarding its application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last pre-filing meeting.
2	Insufficient support during MAP or APA process IRAS and the taxpayer agreed on the specified timeline by which the taxpayer is to submit the information required by IRAS. If the taxpayer fails to provide the information by the timeline and it remains outstanding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RAS will consider that the taxpayer has withdrawn from the MAP or APA process.	When taxpayer fails to provide the information within 3 months after the agreed timeline.
3	Failure to provide complete information The taxpayer should provide any relevant and material information that may affect the outcome of the MAP or APA to IRAS on a timely basis. If the taxpayer fails to provide any material information that could have affected the outcome of the MAP or APA, IRAS will consider discontinuing the MAP or APA process.	When it is found that the taxpayer has not provided such material information.

8.40 Where a MAP or APA process has been discontinued under any of the above situations or has been withdrawn by the taxpayer, and the taxpayer subsequently wishes to resume the MAP or APA process, IRAS will consider the request as if it is a new application. IRAS will assess the merits of the request based on its prior experience.

8.41 IRAS may revoke or cancel a MAP or APA agreement, even retroactively, in the case of fraud or misrepresentation of information during a MAP or APA negotiation, or when a taxpayer fails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MAP or APA.

8.42 Before IRAS discontinues a MAP or APA process or cancels or revokes a MAP or APA agreement, it will notify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of its intention and the reasons for such action.

Other compliance matters

8.43 Taxpayers, who have appointed tax agents or other representatives to act on their behalf on matters relating to their MAP or APAs, are required to provide IRAS with a letter of authorisation ("LOA"). The LOA is to enable IRAS to correspond and discuss with the appointed tax agents and representatives on the matters relating to the applications. A sample of the LOA is in Annex B1.

8.44 IRAS does not impose any fee for MAP and/ or APAs except for unilateral APAs where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volve a jurisdiction with which Singapore does not have a tax treaty. Such unilateral APAs will be processed under the Advance Ruling System with charges.

8.45 IRAS does not accept tax agents' requests to initiate MAP or APA discussion for their clients who wish to preserve anonymity. Taxpayers should therefore engage IRAS without masking their identity if they are serious about applying for MAP or APAs.

8.46 All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MAP and APA process is protected by the confidentiality provisions in the ITA and the relevant tax treaty.

9 Guidance on MAP process

Introduction

9.1 This section provides guidance on the MAP process. Please refer to section 8 for MAP details, benefits, expectations and compliance rules.

MAP process

9.2 The MAP process consists of five steps as shown in this diagra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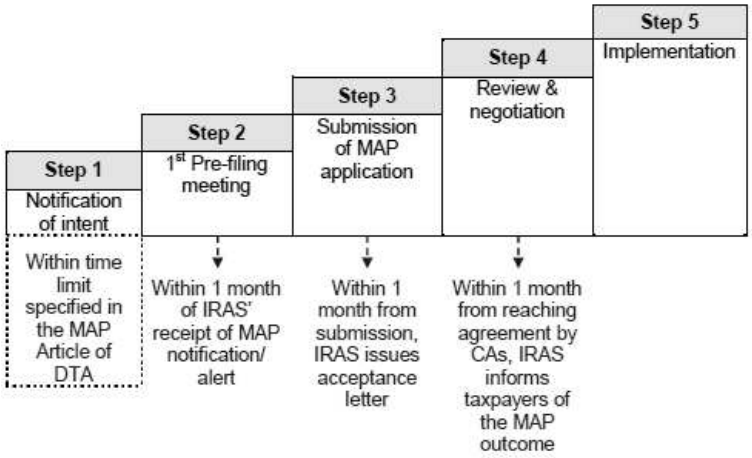

Step 1 – Notification of intent

9.3 Once the MAP route is decided on, all the related parties involved should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ies ("CAs") of the jurisdictions in which they are tax residents of their intent to initiate the MAP. Foreign branches operating in Singapore should alert IRAS if their head offices have made such notification.

9.4 The notification to IRAS should be in writing and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ause and circumstances for double taxation. A guide on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d for pre-filing meeting is provided in Annex B2.

Step 2 – Pre-filing meetings

9.5 IRAS will meet the taxpayer within one month of receiving the MAP notification or alert. The purpose of the pre-filing meeting is for :

(a) The taxpayer to explain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b) The taxpayer to update IRAS on the actions taken by its related partie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c) IRAS to evaluate whether the MAP request is justifiable;
(d) IRAS to ascertain the taxpayer's TP documentation; and
(e) IRAS to indicate if it is inclined to accept the MAP request.

9.6 If IRAS is inclined to accept the MAP request, IRAS will provide guidance on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 the formal application as well as the next course of action.

Step 3 – Formal application

9.7 Unless IRAS or any of the other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does not agree to the taxpayer's MAP request, the taxpayer should proceed to submit its application.

9.8 The application should be made in a soft copy and three hardcopies.

9.9 Taxpayers should also concurrently submit the MAP application to the other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9.10 The application should include all the details and documentation based on the guidance provided under section 6. Taxpayers should ensure that detailed descriptions on the covered transaction, covered entities, covered period and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and analysis are also provided (refer to the sample of an APA agreement in Annex B3 for a brief description on each term).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included if relevant.

Step 4 – Review and negotiation

9.11 If IRAS accepts the applications, it will issue letters of acceptance to the taxpayer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within one month of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s. If IRAS rejects the applications, it will notify the taxpayers in writing with reasons.

9.12 IRAS may seek clarification or further information from the taxpayers, hold discussions with the taxpayers or conduct site visits to taxpayers' premises which include the interviewing of taxpayers' key personnel.

9.13 IRAS will indicate the expected timeline and will regularly update taxpayers on the progress and the outcome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negotiations.

Step 5 – Implementation

9.14 When an outcome is reached between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IRAS will meet the taxpayers within one month of reaching agreement to discuss the details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taxpayers will have to decide whether the agreed outcome is acceptable.

9.15 Unless the taxpayers reject the outcome, IRAS and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will proceed to :

(a) Exchange confirmation letters and agreement to conclude the MAP;

(b) Give copies of the agreement to their respective taxpayers; and

(c) Amend the assessments by making corresponding adjustments and/ or revising the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to relieve the double taxation. Please refer to paragraphs 11.19 to 11.25 for IRAS' position on corresponding adjustments.

10 Guidance on APA process

Introduction

10.1 This section provides guidance on the APA process. Please refer to section 8 for APA details, benefits, expectations and compliance rules.

APA process

10.2 The APA process consists of four steps as shown in the diagram below. Taxpayers should observe the relevant timelines which run from the first day of the APA period, as illustrated in the same diagram (i.e. timeline illustrat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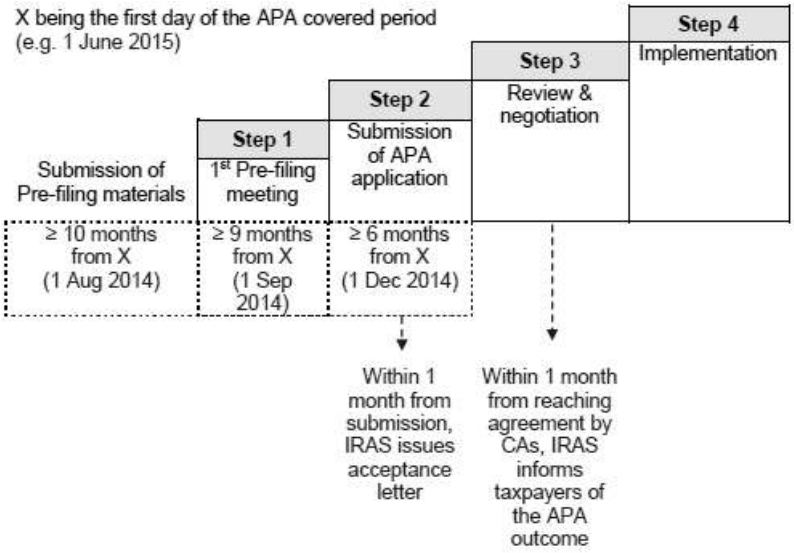

10.3 The timeline is explain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10.4 The following paragraphs will equally apply to unilateral APAs except that references to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CAs") are not relevant.

Step 1 – Pre-filing meetings

10.5 Taxpayers intending to file an APA application should initiate pre-filing meetings with IRAS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eir tax agents.

10.6 The first pre-filing meeting should preferably take place at least nine months from the first day of the APA covered period. In the timeline illustration, as the first day of the APA covered period is 1 June 2015, the first pre-filing meeting should take place no later than 1 September 2014. This is to allow sufficient time for IRAS to review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for the taxpayer to follow-up on IRAS'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10.7 Depending on the complexity of the APA application, it may be necessary to have several pre-filing meetings. As such, taxpayers should plan for ample lead time for these meetings and to contact IRAS early to arrange for the meetings. In the timeline illustration, taxpayers should strive to contact IRAS before August 2014 so that the first pre-filing meeting can take place latest by 1 September 2014.

10.8 To have an effective discussion, IRAS requires :

(a) The taxpayer to provide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e guide on minimum information required for pre-filing meeting in Annex B2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meeting. In the timeline illustration, it will be no later than 1 August 2014.

(b) The taxpayer's representatives who have a good and deep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and are responsible for the taxpayer's tax matters to participate in the pre-filing meetings. Tax agents may also participate in the meetings, if the taxpayer so requests.

10.9 The purpose of the pre-filing meeting is for :

(a) The taxpayer to explain its APA request and update IRAS on its meetings with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b) IRAS to ascertain the merits of the APA request before taxpayers undertake further work on the APA application;

(c) IRAS and taxpayers to identify critical and relevant areas of focus and areas where additional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analysis are required; and

(d) IRAS to ascertain the taxpayer's TP documentation.

10.10 If IRAS is inclined to accept the APA request, it will provide guidance on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 the formal application as well as the next course of action.

10.11 It is to be highlighted that a taxpayer's initiation of pre-filing meetings or APA application does not suspend any audit or enforcement process that IRAS may be conducting on the taxpayer.

Step 2 – Formal Application

10.12 Unless IRAS or any of the other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does not agree to taxpayers' APA request, the taxpayers should proceed to submit their application.

10.13 The application should be made in a soft copy and three hardcopies.

10.14 The application should include all the details and documentation based on the guidance provided under section 6. Taxpayers should ensure that detailed

descriptions on the covered transaction, covered entities, covered period and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and analysis are also provided (refer to the brief description on each term in the sample of an APA agreement in Annex B3).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included if relevant.

10.15 Taxpayers should submit their application to IRAS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first day of the APA covered period. In the timeline illustration, the filing deadline is no later than 1 December 2014 which is six months from day 1 of the APA covered period (i.e. 1 June 2015). Late submission may cause the APA application to be rejected.

10.16 For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A, taxpayers should submit the application simultaneously to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Where the filing deadline imposed by a foreign competent authority is earlier than IRAS', taxpayers should observe the earlier filing deadline.

Step 3 – Review and negotiation

10.17 If IRAS accepts the applications, it will issue letters of acceptance to the taxpayer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within one month of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s. If IRAS rejects the applications, it will notify the taxpayers in writing with reasons.

10.18 The acceptance of an APA applic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RAS endorses all the proposals in the application. IRAS reserves the right to propose alternatives either on its own or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These may include a change in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or limiting/ expanding the scope of the APA.

10.19 Upon accepting the application, IRAS will contact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to initiate APA discussion. IRAS will formulate its position concerning the APA applications. IRAS may seek clarification or further information from the taxpayers (such as segmented financial data), hold discussions with the taxpayers or conduct site visits to the taxpayers' premises which include the interviewing of taxpayers' key personnel.

10.20 IRAS will indicate the expected timeline and regularly update taxpayers on the progress and the outcome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negotiations.

Step 4 - Implementation

10.21 When an agreement is reached with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IRAS will meet the taxpayers within one month of reaching agreement to discuss the details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taxpayers will have to decide whether the agreed outcome is acceptable.

10.22 Unless the taxpayers reject the outcome :

(a) IRAS will proceed to issue the APA agreement to the taxpayers in the case of a unilateral APA.

(b)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will proceed to do the following in the case of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PA :

- Exchange confirmation letters and agreement to conclude the APA;
- Give copies of the agreement to their respective taxpayers; and
- Amend the assessments by making compensating adjustments to the roll-back years, if necessary. Please refer to paragraphs 11.11 to 11.14 for IRAS' position on compensating adjustments

10.23 Once an APA agreement becomes effective, the taxpayer is to comply with the APA term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A sample of the APA agreement is provided in Annex B3.

10.24 As long as the taxpayer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PA agreement, IRAS will not audit the taxpayer's transfer prices for the covered period.

10.25 Taxpayers must file annual compliance reports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PA agreement together with their income tax returns. IRAS does not prescribe a fixed format for the annual compliance report. However, taxpayers may refer to Annex B4 for a guide on annual compliance reports.

10.26 Taxpayers should keep relevant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the annual compliance reports (refer to section 6).

10.27 Taxpayers should notify IRAS and the relevant foreign competent authorities of any breach of any of the conditions in the APA agreement as early as

possible. Taxpayers should also provide an impact analysis and proposed course of action to facilitate the competent authorities' evaluation and discussion.

Renewal of an APA

10.28 Taxpayers may request to renew an existing APA agreement by following the same four-step APA process. Taxpayers should highlight any significant changes to the circumstances prevailing when the existing APA agreement was made.

참고문헌

○ 싱가포르 국세청(https：//www.iras.gov.sg)
○ KOTRA (www.kotra.or.kr)
○ KOTRA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OIS (Overseas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조세제도 (싱가포르편_전병힐)
○ 싱가포르 통계청・통상산업부・경제개발청・인력부・통화청・국세청・통계청・IE Singapore
○ IMF, World Bank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2010
○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09/10
○ http：//www.kpmg.com/sg
○ http：//www.pwc.com/taxsummaries

국세청
WWW.NTS.GO.KR

싱가포르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28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행정사무관 김 태 열
국세조사관 홍 영 표
국세조사관 박 원 석
국세조사관 이 지 영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4-282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프린팅마당

NATIONAL TAX SERVICE REPUBLIC OF KOREA
NTS
국 세 청